# 대외무역법 시행령

[시행 2022. 12. 11.] [대통령령 제33042호, 2022. 12.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2월 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창양

⊙대통령령 제33042호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1항제1호나목 중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2조의3에서 같다)"을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57조의2의 제목 "(서류검사)"를 "(자료조사)"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서류"를 각각 "자료"로 한다.

제5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1억원 이상"을 "1천만원 이상이거나 과징금납부의무자가 중소기업"으로 한다.

제60조제2항 본문 중 "수출입 규모"를 "수출입 규모, 중소기업 여부"로 한다.

제66조의 제목 "(수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준 등)"을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수출 물품 또는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증명서"로, "수출물품원산지증명서발급신청서"를 "수출 물품 또는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증명서발급신청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수출 물품의 가격·수량"을 "가격·수량"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수출물품의 원산지"를 "수출 물품 또는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수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수출 물품 또는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증명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협정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를 "협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수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수출 물품 또는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증명서"로 한다.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수출 물품 또는 수입원료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생산되어 국내에서 유통되거나 판매되는 물품등(이하 "국내생산물품등"이라 한다)의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이나 협정에서 정한 기준
2. 상대 수입국에서 정한 기준
3. 법 제3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기준

제90조 중 "수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수출 물품 또는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증명서"로 한다.

제91조제6항에 제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3. 제60조의2제2항에 따른 공표에 관한 권한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 대외무역법 시행령

[시행 2022. 11. 1] [대통령령 제32968호, 2022. 11. 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대통령령 제32968호(2022.11.1)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일부개정령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을 "국군방첩사령부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5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국군방첩사령부
⑥부터 ⑩까지 생략
제3조 생략

## 대외무역법 시행령

[시행 2022. 1. 1] [대통령령 제32297호, 2021.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대통령령 제32297호(2021.12.31)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2호다목의 위반행위란 중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 대외무역법 시행령

[시행 2021. 2. 5] [대통령령 제31424호, 2021. 2. 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대통령령 제31424호(2021.2.2)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호 중 "「방위사업법」 제38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산물자등"을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위산업물자등"으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제5조 생략

## 대외무역법 시행령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145조까지 생략
제146조(「대외무역법 시행령」의 개정)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외화가득률(外貨稼得率)"을 "외화획득률(외화획득액에서 외화획득용 원료의 수입금액을 공제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손모량(損耗量)"을 "손실량"으로 한다.
제30조제3항제1호 중 "손모량"을 "손실량"으로 한다.
제54조의5제2호나목 중 "사양"을 "규격"으로 한다.
제147조부터 제473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대외무역법 시행령

[시행 2020. 12. 10] [대통령령 제31221호, 2020. 12. 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대통령령 제31221호(2020.12.8)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을 "「소프트웨어 진흥법」"으로 한다.
제9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6조"를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10조"로 한다.
⑤부터 <20>까지 생략
제9조 생략

# 대외무역법 시행령

[시행 2020. 6. 19] [대통령령 제30785호, 2020. 6.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6월 16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윤모

⊙대통령령 제30785호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니하나"를 "않으나"로, "미사일"을 "미사일 및 재래식무기"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3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7조(전략물자 판정 업무 등의 위탁)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20조제2항 후단에 따라 그 소관 물품등이 전략물자 또는 상황허가 대상인 물품등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제36조제2항에 따른 판정 및 통보 업무를 「원자력안전법」 제6조에 따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에 위탁한다.

제48조제2항 중 "제37조에 따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을 "「원자력안전법」 제6조에 따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으로 한다.

제94조 중 "법 제59조제1항 및 제2항"을 "법 제5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다목 중 "제2호가목"을 "제2호가목 및 나목"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제2호나목"을 "제2호다목"으로 하며, 같은 표 제2호가목부터 사목까지를 각각 나목부터 아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 | | |
|---|---|---|---|---|
| 가. 법 제20조제3항 전단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자가판정을 한 경우 또는 같은 항 후단을 위반하여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에 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9조 제3항 | 250 | 350 | 500 |

부칙

이 영은 2020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 및 제4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대외무역법 시행령

[시행 2020. 2. 18] [대통령령 제30418호, 2020. 2.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2월 1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윤모

⊙대통령령 제30418호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3조제6항"을 "법 제33조의2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3조제6항"을 "법 제33조의2제1항"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9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제2호가목에 대한 과태료의 금액은 부과권자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

라. 제2호나목에 대한 과태료의 금액은 1천만원을 넘지 못한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
|---|---|---|---|---|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가. 법 제24조의2에 따른 서류 보관의무를 위반한 경우 | 법 제59조 제2항제1호 | 500 | 700 | 1,000 |
| 나. 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다만, 농수산물 및 농수산물 가공품의 경우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과태료를 적용한다. | 법 제59조 제2항제3호 | 해당 물품의 판매장소 및 양도장소에서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고 유통시킨 물량(판매를 위한 창고 저장 물량과 이미 판매된 물량 중 확인 가능한 | 해당 물품의 판매장소 및 양도장소에서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고 유통시킨 물량(판매를 위한 창고 저장 물량과 이미 판매된 물량 중 확인 가능한 | 1,000 |

| | | | | |
|---|---|---|---|---|
| | | 물량을 포함한다)에 현지의 실제거래가격을 곱한 금액이나 500만원 중 많은 금액 | 물량을 포함한다)에 현지의 실제거래가격을 곱한 금액이나 700만원 중 많은 금액 | |
| 다. 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련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9조제1항제1호 | 1,000 | 1,500 | 2,000 |
| 라. 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사실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59조제1항제2호 | 1,000 | 1,500 | 2,000 |
| 마.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 | 법 제59조제1항제3호 | 1,000 | 1,500 | 2,000 |
| 바.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59조제1항제4호 | 1,000 | 1,500 | 2,000 |
| 사. 법 제49조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9조제2항제4호 | 500 | 700 | 1,000 |

## 대외무역법 시행령

[시행 2019. 1. 29] [대통령령 제29505호, 2019. 1.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월 2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윤모

⊙대통령령 제29505호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로"를 "자로서 신용등급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로"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대외무역법 시행령

[시행 2018. 9. 1] [대통령령 제29114호, 2018. 8. 2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대통령령 제29114호(2018.8.21)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5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군사안보지원사령부
⑥부터 ⑨까지 생략
제4조 생략

## 대외무역법 시행령

[시행 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2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대통령령 제28212호(2017.7.26)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가정보원
2. 검찰청
3. 경찰청
4. 해양경찰청
5. 국군기무사령부
⑥부터 <32>까지 생략

## 대외무역법 시행령

[시행 2016. 10. 18] [대통령령 제27548호, 2016. 10.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0월 1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형환

⊙대통령령 제27548호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나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다목부터 마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에서 외국인에게 국내에서 생산(제조·가공·조립·수리·재생 또는 개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된 물품을 매도하는 것

제2조제6호 중 "생산(제조·가공·조립·수리·재생 또는 개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을 "생산하는"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대외무역법 시행령

[시행 2016. 9. 23] [대통령령 제27506호, 2016. 9. 2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대통령령 제27506호(2016.9.22)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제3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⑧부터 <24>까지 생략

## 대외무역법 시행령

[시행 2016. 7. 28] [대통령령 제27382호, 2016. 7.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7월 26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형환

⊙대통령령 제27382호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수출입의 제한) 법 제11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항공 관련 품목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제24조제1항 중 "제17조에 따라 수입승인 대상으로 지정된"을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수입승인을 받아야 하는"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수출이 완료된 기계류의 하자 및 유지 보수를 위한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인 경우: 하자 및 유지 보수 완료일부터 2년

제32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무기거래조약(ATT)

제33조제2항 단서 중 "관계 행정기관"을 "국내·국제 관계기관"으로 한다.

제34조제1호 중 "사용되는지 여부"를 "사용될 것"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안전유지"를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로, "미치는지 여부"를 "미치지 아니할 것"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가졌는지 여부 및 그 사용 용도를 믿을 수 있는지 여부"를 "가지고 있고 그 물품등의 사용 용도를 신뢰할 수 있을 것"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제32조에"를 "제32조 각 호에"로, "지키는지 여부"를 "지킬 것"으로 한다.

제40조의2의 제목 "(전략물자등의 경유 또는 환적허가)"를 "(전략물자등의 경유 또는 환적 허가 신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그 허가신청서에 경유 또는 환적 허가에 필요한 서류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유 또는 환적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거래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2. 해당 경유 또는 환적에 관련된 수출자, 수입자, 최종 사용자 등에 관한 서류
3. 그 밖에 전략물자등의 경유 또는 환적 허가에 필요한 서류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제40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경유 또는 환적 허가 신청서를 제출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경유 또는 환적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경유 또는 환적 허가를 신청한 전략물자등에 대하여 별도의 기술 심사, 국내·국제 관계기관과의 협의 또는 현지조사가 필요한 경우 이를 위하여 걸리는 기간은 본문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3(전략물자등의 경유 또는 환적 허가의 기준) 법 제23조제4항에서 "국제평화, 안전유지 및 국가안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해당 전략물자등이 평화적 목적에 사용될 것
2. 해당 전략물자등의 경유 또는 환적이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3. 해당 전략물자등의 수출자, 수입자, 최종 사용자 등이 거래에 적합한 자격을 가지고 있고 그 전략물자등의 사용 용도를 신뢰할 수 있을 것
4. 그 밖에 제32조 각 호에 따른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원칙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지킬 것

제41조제2항 단서 중 "관계 행정기관"을 "국내·국제 관계기관"으로, "하는 데에 필요한"을 "위하여 걸리는"으로 한다.

제42조제1호 중 "사용되는지 여부"를 "사용될 것"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안전유지"를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로, "미치는지 여부"를 "미치지 아니할 것"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가졌는지 여부 및 그 사용 용도를 믿을 수 있는지 여부"를 "가지고 있고 그 물품등의 사용 용도를 신뢰할 수 있을 것"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제32조에"를 "제32조 각 호에"로, "지키는지 여부"를 "지킬 것"으로 한다.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 중 "전략물자"를 각각 "전략물자등"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관세청: 전략물자등 통관 및 통관과정 중 전략물자등 불법수출입에 관한 사항
8. 정보수사기관(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정보수사기관을 말한다): 국내외 전략물자등 관련 정보협력,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전략물자등 수출입, 불법수출입에 관한 사항

제70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제7호는 무기거래조약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계류의 하자 및 유지 보수를 위한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외화획득 이행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기계류의 하자 및 유지 보수를 위한 외화획득용 원료·기재를 수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대외무역법 시행령

[시행 2015. 12. 30] [대통령령 제26774호, 2015.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대통령령 제26774호(2015.12.30)

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를 위한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대외무역법 시행령」의 개정)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9조 및 별지 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제13조부터 제41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대외무역법 시행령

[시행 2015. 1. 1] [대통령령 제25840호, 2014. 12. 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대통령령 제25840호(2014.12.9)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63조까지 생략
제64조(「대외무역법 시행령」의 개정)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3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5조제2항에 따른 무역의 진흥을 위한 무역 지원 대상이 되는 무역 관련 시설의 기준: 2015년 1월 1일
2. 제43조에 따른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지정 등: 2015년 1월 1일
3. 제45조에 따른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보고사항 및 보고기간: 2015년 1월 1일
4. 제60조의2제2항에 따른 원산지 표시의무 위반자의 공표사항 및 절차: 2015년 1월 1일
제65조부터 제247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 대외무역법 시행령

[시행 2014. 11. 19]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대통령령 제25751호(2014.11.19)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6>까지 생략
<287>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5항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의2를 삭제한다.
1. 국민안전처
<288>부터 <418>까지 생략

## 대외무역법 시행령

[시행 2014. 7. 22] [대통령령 제25475호, 2014. 7.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7월 16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상직

⊙대통령령 제25475호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정부간 수출계약의 절차)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절차를 말한다.
1. 외국 정부의 물품등(「방위사업법」 제38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산물자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54조의5 및 제54조의6에서 같다) 구매의사에 관한 법 제32조의3제1항에 따른 정부간 수출계약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의 확인
2. 국내 기업의 정부간 수출계약 이행능력에 관한 평가 및 추천. 다만, 외국 정부가 물품등을 수출할 국내 기업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추천을 생략할 수 있다.
3. 전담기관과 국내 기업의 정부간 수출계약 이행에 관한 약정의 체결
4. 전담기관과 외국 정부와의 수출에 관한 계약의 체결(국내 기업과 함께 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전문무역상사의 지정 기준 등) ①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전문무역상사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무역거래자
가. 전년도 수출실적 또는 직전 3개 연도의 연평균 수출실적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일 것
나. 가목에 따른 수출실적 중 다른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2조의3에서 같다)이나 중견기업(「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2조의3에서 같다)이 생산한 물품등의 수출실적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일 것
2. 신시장의 개척, 신제품의 발굴 및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대한 효과적인 수출 지원 등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농업·어업·수산업 등 업종별 특성과 조합 등 법인의 조직 형태별 수출 특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춘 무역거래자
②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전문무역상사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지정신청서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전문무역상사의 지정을 신청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전문무역상사로 지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무역상사의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의3(전문무역상사에 대한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문무역상사를 통한 신시장의 개척, 신제품의 발굴 및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수출 확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전문무역상사의 국내외 홍보, 우수제품의 발굴, 해외 판로개척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무역 또는 통상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장에 제5절(제54조의2부터 제54조의7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절 정부간 수출계약

제54조의2(정부간 수출계약 보증사업의 수행 기관) 법 제3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보험기관"이란 국내에서 수출·수입 등 대외거래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 업무를 10년 이상 영위하고 있는 자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 지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1.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보증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재정능력
2. 수출·수입 등 대외거래의 당사자에 대한 신용정보의 수집·분석 및 평가에 관한 능력
3. 수출·수입 등 대외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에 대한 관리체계

제54조의3(정부간 수출계약의 이행 보증 조치) 법 제32조의3제3항제1호에서 "보증·보험의 제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 이행 보증 조치"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다만, 외국 정부와 국내 기업이 합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계약 이행 보증 조치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정부간 수출계약의 내용에 따른 선수금의 반환, 계약 내용의 이행, 하자의 보수 등에 대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보증을 받아 제공하는 것
2. 외국 정부에 대한 정부간 수출계약 이행 등에 대하여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보증·보험기관으로부터 보증을 받아 제공하는 것

제54조의4(전담기관의 권한과 책임) ① 전담기관은 정부간 수출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은 정부간 수출계약이 체결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법 제32조의4제1항에 따른 정부간 수출계약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1. 국내 기업의 정부간 수출계약 이행 상황을 확인하여 반기별로 1회 이상 보고할 것
2. 제54조의5제2호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은 그 변경 등이 있은 날부터 2주 이내에 보고할 것

제54조의5(정부간 수출계약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법 제32조의4제1항에서 "정부간 수출계약의 체결, 변경, 해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외국 정부와 체결하려는 정부간 수출계약의 수용 여부, 국내 기업의 이행능력 평가, 법 제32조의3제3항제1호에 따라 국내 기업으로 하여금 조치하도록 할 계약 이행 보증 내용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2. 계약기간·계약금액 등 정부간 수출계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다만, 다음 각 목의 사항으로서 위원회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제외한다.
   가. 물품등의 인도 횟수, 인도 장소의 변경
   나. 부품·사양의 변경
   다. 대금의 지급방법 및 지급횟수의 변경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사항
3. 법 제32조의5제2항에 따라 국내 기업이 조치를 한 계약 이행 보증 세부 사항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4. 국내 기업의 정부간 수출계약에 따른 물품등의 공급 의무 불이행, 인가·허가·면허 등의 취소·정지 등으로 인한 계약 이행능력의 상실, 부정한 방법에 의한 계약의 체결,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정부간 수출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부간 수출계약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부치는 사항

제54조의6(정부간 수출계약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산업통상자원부 및 조달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전담기관의 임원 중 전담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명
3. 정부간 수출계약의 해당 물품등과 관련이 있다고 위원회의 위원장이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4. 제54조의2에 따른 보증·보험기관의 임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의 추천으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5. 정부간 수출계약과 관련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7명 이내의 범위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국내 기업의 이행능력 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4조의7(국내 기업의 계약 이행 보증 조치) 법 제32조의5제2항에서 "보증·보험의 제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 이행 보증 조치"란 제54조의3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제91조제5항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8조의2제1항 및 이 영 제12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전문무역상사의 지정 및 법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

제9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3조의2(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무역상사의 지정 기준에 대하여 2014년 7월 22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영은 2014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대외무역법 시행령

[시행 2014. 1. 31] [대통령령 제25118호, 2014. 1.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월 28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상직

⊙대통령령 제25118호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 중 "법 제5조제2호·제3호"를 각각 "법 제5조제2호·제3호·제4호의2"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로 한다.

제18조제1항 전단 중 "신청하려는 자"를 "신청하려는 자 및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수출 또는 수입 승인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를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법 제11조제2항 본문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1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등의 수출 또는 수입 승인의 유효기간을 1년 미만으로 하거나 최장 2년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다만, 제42조의2제2항에 따른 허가의 유효기간(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수출허가의 유효기간만 해당한다)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까지 수출 승인의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다.

1. 국내의 물가안정이나 수급 조정을 위하여 수출 또는 수입 승인의 유효기간을 1년 보다 단축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수출입계약 체결 후 물품등의 제조·가공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3. 수출입계약 체결 후 물품등이 1년 이내에 선적되거나 도착하기 어려운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외에 수출입 물품등의 인도 조건 및 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출 또는 수입 승인의 유효기간을 1년보다 단축하거나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1조제3항"을 "법 제11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제32조의 제목 "(다자간 국제수출통제체제)"를 "(국제수출통제체제)"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자간 국제수출통제체제"를 "국제수출통제체제"로 한다.

제32조의2 제목 외의 부분 중 "다자간 국제수출통제체제"를 "국제수출통제체제"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은 제외한다.

1. 일반에 공개된 기술
2. 기초과학연구에 관한 기술
3. 특허 출원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술
4.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수출허가를 받은 물품등의 설치, 운용, 점검, 유지 및 보수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술

제3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3(기술이전) 법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32조의2 본문에 따라 고시하는 기술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전화, 팩스, 이메일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이전
2. 지시, 교육, 훈련, 실연(實演) 등 구두나 행위를 통한 이전
3. 종이, 필름, 자기디스크, 광디스크, 반도체메모리 등 기록매체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통한 이전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출하려는"을 "수출(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기술이 법 제1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32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이전되는 경우

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41조의2, 제42조, 제42조의2 및 제43조부터 제47조까지에서 같다)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수출하는 물품등의 용도 등에 관한 최종 사용자의 서약서

제34조제4호 중 "다자간 국제수출통제체제"를 "국제수출통제체제"로 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략물자에"를 "전략물자 또는 법 제19조제3항제13호에 따른 상황허가 대상인 물품등에"로, "전략물자판정신청서"를 "판정신청서"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전략물자"를 "전략물자 또는 법 제19조제3항제13호에 따른 상황허가 대상인 물품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전략물자"를 "전략물자 또는 법 제19조제3항제13호에 따른 상황허가 대상인 물품등"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전략물자의 판정"을 "판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전략물자 판정"을 "판정"으로 한다.

제4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발급한 전략물자 수입목적확인서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40조의2제1항제1호 중 "전략물자등(전략물자나 상황허가 대상인 물품등을 말한다)"을 "전략물자나 상황허가 대상인 물품등(이하 "전략물자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1조의 제목 "(전략물자의 중개허가 신청 등)"을 "(전략물자등의 중개허가 신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략물자를 중개하려는 자는 전략물자 중계허가신청서에"를 "전략물자등을 중개하려는 자는 전략물자등 중개허가신청서에"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 중 "전략물자"를 각각 "전략물자등"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전략물자"를 "전략물자등"으로 한다.

4의2. 중개하는 전략물자등의 용도 등에 관한 최종 사용자의 서약서

제41조의2의 제목 "(전략물자의 중개허가의 면제)"를 "(전략물자등의 중개허가의 면제)"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자간 국제수출통제체제"를 "국제수출통제체제"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다자간 국제수출통제체제"를 "국제수출통제체제"로 한다.

제42조제4호 중 "다자간 국제수출통제체제"를 "국제수출통제체제"로 한다.

제4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2(수출허가 등의 유효기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1.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수출허가
2.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상황허가
3.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경유 또는 환적 허가
4. 법 제24조에 따른 중개허가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의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전략물자 중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기술을 수출하려는 경우
2.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자율준수무역거래자(법 제19조제2항 및 이 영 제32조의3에 따른 기술이전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하거나 기술이전 행위를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 및 제75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수출허가를 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전략물자등의 인도 조건, 대금 결제의 기간이나 조건, 경유 또는 환적이나 중개 등과 관련된 거래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허가 유효기간의 설정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

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43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학 및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학 및 연구기관을 말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4.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5. 국·공립 연구기관
6.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7.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제43조제3항(종전의 제2항)제1호 중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을"을 "제2항 각 호의 능력을 갖추었음을"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자율준수무역거래자를 지정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능력을 갖춘 정도에 따라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등급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3조제5항(종전의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신청서 접수일부터 40일 이내에 지정 여부와 그 등급(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된 경우만 해당한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43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2항에 따른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을 위한 능력의 심사 및 등급 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수출허가를 받은 물품등의 최종 사용자에 관한 관리 업무

1의2.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수출허가를 받은 물품등의 최종 용도에 관한 관리 업무

제44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3조제4항의 등급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수출통제업무의 자율적인 관리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5조제2호 중 "제43조제1항"을 "제43조제2항"으로 한다.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 중 전략물자 관련 기술의 수출입통제에 관한 사항
2. 외교부: 외교에 영향을 주는 사항 및 전략물자의 수출입통제와 관련된 국제규범에 관한 사항
3. 통일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반출·반입 승인 대상 품목 중 전략물자에 관한 사항 및 남북 교류·협력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5. 산업통상자원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전략물자(원자력 전용 품목은 제외한다)의 수출입통제 및 통상교섭에 영향을 주는 사항

6. 원자력안전위원회: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전략물자 중 원자력 전용 품목의 수출입통제에 관한 사항

제47조제5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해양경찰청

제49조제1항제2호 중 "다자간 국제수출통제체제"를 "국제수출통제체제"로 한다.

제59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3조제6항에 따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5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9조의2(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내야 할 과징금의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과징금의 전액을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재해나 천재지변, 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경제 여건이나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있는 경우
3. 과징금을 한꺼번에 내면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하려는 자는 그 납부기한의 10일 전까지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장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를 하게 하는 경우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4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장되거나 분할납부가 허용된 과징금납부의무자에 대하여 그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1. 분할납부가 결정된 과징금을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
2. 담보의 제공에 관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을 받은 때 등 과징금의 전부 또는 잔여분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0조제1항 중 "법 제33조제6항"을 "법 제33조의2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으로 한다.

제6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0조의2(원산지 표시의무 위반자의 공표) ① 법 제33조의2제5항에 따른 공표의 대상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이 확정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별표 2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위반물품등의 수출입 신고 금액(판매업자의 경우에는 판매한 물품등과 판매하지 아니한 물품등을 구분하여 판매한 물품등의 매출가액과 판매하지 아니한 물품등의 매입가액을 합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물품등의 가액"이라 한다)이 10억원(「관세법」 별표에 따른 품목 중 제1류부터 제24류까지의 품목 및 소금의 경우에는 5억원을 말한다) 이상인 자
2. 「관세법」 별표에 따른 품목 중 제1류부터 제24류까지의 품목 및 소금에 대한 별표 2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원산지 표시 위반물품등의 가액 중 다음 각 목의 위반행위로 인한 가액을 합산한 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자
가.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
나. 원산지 표시를 국내산으로 변경하는 행위
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 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날부터 과거 2년 이내의 기간(초일을 산입한다) 동안 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횟수가 3회 이상일 것
나. 가목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 중 확정된 처분이 3회 이상일 것
다. 나목에 따른 확정된 과징금 부과처분의 사유가 된 원산지 표시 위반물품등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것
4. 「관세법」 별표에 따른 품목 중 제1류부터 제24류까지의 품목 및 소금에 대한 원산지 표시의무를 위반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 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날부터 과거 2년 이내의 기간(초일을 산입한다) 동안 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횟수가 3회 이상일 것
나. 가목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 중 확정된 처분이 3회 이상일 것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표 대상자에 대해서는 법 제33조의2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시·도의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1.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 표시의무 위반사실의 공표"라는 표제
2. 위반자의 성명 또는 명칭(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한다) 및 주소(법인의 경우 주된 영업소의 주소와 원산지 표시의무 위반행위를 한 사업장 주소를 말한다)
3. 원산지 표시 위반물품등의 종류, 명칭 및 위반내용
4.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권자, 처분일, 처분 내용

제6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0조의3(자료의 요청)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3조 및 제33조의2에 따른 업무가 통일적이고 원활하게 집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대한 자료의 제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91조제1항제6호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4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법 제5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같은 항 제3호는 이 항 제3호의 권한에 따른 경우에만 한정한다)"를 "법 제59조제2항제3호(이 항 제3호의 권한에 따른 경우만 해당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제1호 중 "법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수출 또는 수입의 승인"을 "법 제1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수출 또는 수입의 승인, 승인의 유효기간 설정 및 연장"으로 한다.
4.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
4의2. 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 및 이 영 제59조의2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분할납부 및 그 결정의 취소에 관한 권한

제92조의 제목 "(권한의 위임·위탁에 따른 조정)"을 "(권한의 위임·위탁 등에 따른 조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91조제3항제4호·제5호, 같은 조 제4항제4호 또는 제7호"를 "법 제33조의2제2항, 법제59조제3항(법 제59조제2항제3호를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이 영 제91조제4항제4호의2 및 제7호"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 제1호다목 중 "제2호나목 및 다목"을 "제2호다목"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나목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출입 승인의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수출 또는 수입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전략물자 수입목적확인서의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전략물자 수입목적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수출허가 등의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수출허가, 상황허가, 경유 또는 환적허가나 중개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3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법 제33조제4항제4호는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6조(원산지 표시의무 위반자의 공표에 관한 적용례) ① 제60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1. 이 영 시행 후 법 제3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법 제33조제4항제4호는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1회 이상 받고, 그 중 확정된 처분이 1회 이상일 것
2. 제1호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날부터 과거 2년 이내의 기간(초일을 산입한다) 동안 법 제33조의2제2항 또는 종전의 대외무역법(법률 제11958호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33조제6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횟수가 2회 이상일 것
3. 제2호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 중 확정된 처분이 2회 이상일 것
4.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확정된 과징금 부과처분의 사유가 된 원산지 표시 위반물품등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것(제60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제6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공표하는 경우 그 공표의 내용은 이 영 시행 후 법 제3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법 제33조제4항제4호는 제외한다)을 위반한 사항으로 한다.

제7조(종전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등급 결정 신청 등에 관한 특례) ①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된 자는 이 영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43조제3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자율준수무역거래자 등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등급 신청에 대한 등급의 결정 및 통지에 관하여는 제43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③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된 자가 제2항에 따른 등급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까지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수출통제업무의 범위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2]

##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제60조제1항 관련)

| 위 반 행 위 | 근거 법조문 | 과 징 금 금 액 |
|---|---|---|
| 1. 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단순한 가공활동을 거침으로써 해당 물품등의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형한 자(무역거래자 또는 물품등의 판매업자에 대하여 법 제33조제4항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그 단순 가공한 물품등에 당초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다르게 표시한 행위 | 법 제33조의2제2항 | 해당 위반물품등의 수출입 신고금액(판매업자의 경우에는 판매한 물품등과 판매하지 아니한 물품등을 구분하여 판매한 물품등의 매출가액과 판매하지 아니한 물품등의 매입가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1억원 중 적은 금액 |
| 2.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행위 | 법 제33조의2제2항 | 해당 위반물품등의 수출입 신고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2억원 중 적은 금액 |
| 3.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등의 판매업자가 법 제33조제4항제1호를 위반하여 물품등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誤認)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 | 법 제33조의2제2항 | 해당 위반물품등의 수출입 신고금액(판매업자의 경우에는 판매한 물품등과 판매하지 아니한 물품등을 구분하여 판매한 물품등의 매출가액과 판매하지 아니한 물품등의 매입가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3억원 중 적은 금액 |
| 4.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등의 판매업자가 법 제33조제4항제2호를 위반하여 물품등의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 법 제33조의2제2항 | 해당 위반물품등의 수출입 신고금액(판매업자의 경우에는 판매한 물품등과 판매하지 아니한 물품등을 구분하여 판매한 물품등의 매출가액과 판매하지 아니한 물품등의 매입가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3억원 중 적은 금액 |
| 5. 무역거래자가 법 제33조제4항제3호를 위반하여 원산지 | 법 제33조의2제2항 | 해당 위반물품등의 수출입 신고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



국가법령정보센터

| | | |
|---|---|---|
| 표시대상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 | | 금액이나 2억원 중 적은 금액 |

## 대외무역법 시행령

[시행 2013. 12. 12] [대통령령 제24955호, 2013. 12. 1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대통령령 제24955호(2013.12.11)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기술표준원장"을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 한다.
⑦부터 <20>까지 생략
제4조 생략

## 대외무역법 시행령

[시행 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2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대통령령 제24442호(2013.3.23)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나목부터 라목까지, 제4호나목부터 라목까지, 같은 조 제11호·제12호, 제3조제1호차목, 제4조제2호·제3호,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같은 조 제7항 전단,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 제8조제3호, 제9조, 제10조제1항·제2항, 제1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12조제6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7항·제8항, 제13조, 제1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17조, 제1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19조제1호,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마목, 같은 조 제3호,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나목,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23조제1항·제2항, 제24조제1항·제2항, 제25조제2항·제3항, 제26조제1항제5호,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2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3항,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제4호, 제3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32조의2,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34조제4호,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제

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4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40조의2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41조의2제2호, 제42조제4호, 제4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호,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제3호, 제47조제1항제1호, 제48조제2항·제3항,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0조 전단, 제52조제2항,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55조제1항·제2항, 제56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단서, 제5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전단·후단, 제57조의2제3호, 제5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60조제2항 본문, 제61조제2항, 제6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6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제5항, 제6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69조, 제7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8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1조제1항, 제82조제1항·제2항, 제8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84조제1항·제2항, 제85조제1항, 제87조 전단·후단, 제88조제1항·제2항, 제90조, 제9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8항 본문,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 제92조제2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3항·제4항 및 별지 서식 앞쪽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4호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47조제1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원자력안전위원회"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를 "원자력안전위원회와"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외교·통상교섭"을 "외교"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산업통상자원부 : 「대외무역법」에 따른 전략물자(원자력안전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원자력 전용 품목은 제외한다)의 수출입통제에 관한 사항 및 통상교섭에 영향을 주는 사항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91조제8항 본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9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16>부터 <92>까지 생략

## 대외무역법 시행령

[시행 2011. 10. 26] [대통령령 제23248호, 2011. 10. 25,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대통령령 제23248호(2011.10.25)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 중 "「원자력법」 제9조의5"를 "「원자력안전법」 제6조"로 한다.

⑥부터 <21>까지 생략

제4조 생략

# 대외무역법 시행령

[시행 2010. 10. 6] [대통령령 제22419호, 2010. 10.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0년 10월 1일

국무총리직무대행 기획재정부 장관 윤증현

국무위원 지식경제부 장관 최경환

⊙대통령령 제22419호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량 파괴무기등”을 “대량파괴무기와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이하 “대량파괴무기등”이라 한다)”로 한다.

제40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0조의2(전략물자등의 경유 또는 환적허가) ① 법 제2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대량파괴무기등의 제조·개발·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되거나 전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전략물자등(전략물자나 상황허가 대상인 물품등을 말한다)을 경유하거나 환적하려는 자
2.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경유 또는 환적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통보받은 자

②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경유 또는 환적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그 허가신청서에 경유 또는 환적 허가에 필요한 서류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절의 제목 중 “산업설비수출”을 “플랜트수출”로 한다.

제50조 전단 중 “산업설비수출”을 “플랜트수출”로 한다.

제51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발전설비
2. 담수 설비 및 용수처리설비
3. 해양설비 및 수상구조설비
4. 석유 처리설비 및 석유화학설비
5. 정유설비 및 송유설비
6. 저장탱크 및 저장기지설비
7. 냉동 및 냉장설비
8. 제철·제강설비 및 철강재구조설비
9. 공해방지설비
10. 공기조화설비
1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12. 정치식(定置式) 운반하역설비 및 정치식 건설용설비
13. 시험연구설비
14. 그 밖에 산업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설비

제52조제1항제3호 본문 중 “산업설비”를 “플랜트”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산업설비수출자”를 “플랜트수출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를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라목”으로, “산업설비수출자”를 “플랜트수출자”로, “산업설비”를 “플랜트”로 한다.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이나 고용노동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산업설비수출”을 “플랜트수출”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내용을”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이나 고용노동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1. 건설용역 및 시공 수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건설용역 및 시공사업계획

제54조의 제목 중 “산업설비수출”을 “플랜트수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설비수출”을 “플랜트수출”로, “산업설비수출촉진기관”을 “플랜트수출촉진기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산업설비수출자”를 “플랜트수출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설비수출촉진기관”을 “플랜트수출촉진기관”으로, “산업설비수출”을 “플랜트수출”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산업설비수출”을 “플랜트수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산업설비수출”을 “플랜트수출”로, “정보교환”을 “정보교류”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산업설비수출”을 “플랜트수출”로 한다.

제55조 앞의 “제5절 원산지의 표시 등”을 삭제한다.

제55조 앞에 “제3장의2 원산지의 표시 등”을 삽입한다.

제55조의 제목 중 “지정”을 “지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3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순한 가공활동”이란 판매목적의 물품포장 활동, 상품성 유지를 위한 단순한 작업 활동 등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부족한 가공활동을 말하며, 그 가공활동의 구체적인 범위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6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57조제4항 전단 중 “법 제33조제2항”을 “법 제33조제3항”으로, “제5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5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7조의2(서류검사) 법 제33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서류”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1. 수입한 물품등의 무역거래자 및 판매업자의 정보에 관한 서류
2. 수입한 물품등의 가격, 수량, 품질 및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 관한 서류
3. 그 밖에 원산지의 표시에 대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3조제5항”을 각각 “법 제33조제6항”으로 한다.

제59조제1항 중 “법 제33조제5항”을 “법 제33조제6항”으로 한다.

제60조제1항 중 “법 제33조제5항”을 “법 제33조제6항”으로 한다.

제62조의 제목 “(수입물품의 원산지 사전 판정)”을 “(원산지 판정 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물품을 수입하기 전에 수입물품의”를 “수출 또는 수입 물품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수입물품”을 “수출 또는 수입 물품”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사전 판정”을 각각 “판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사전 판정”을 각각 “판정”으로 한다.

제91조제3항제3호 중 “법 제33조제4항”을 “법 제33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법 제33조제5항”을 “법 제33조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3호 중 “법 제33조제4항”을 “법 제33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법 제33조제5항”을 “법 제33조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제2호 중 “사전 판정”을 “판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본문 중 “산업설비수출”을 “플랜트수출”로, “고용노동부장관과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33조제2항”을 “법 제33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33조제3항제1호”를 “법 제33조제4항제1호”로 하며, 같은 표 제3호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33조제3항제2호”를 “법 제33조제4항제2호”로 하고, 같은 표 제4호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33조제3항제3호”를 “법 제33조제4항제3호”로 하며, 같은 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해당 법조문란 중 “법 제33조제5항”을 각각 “법 제33조제6항”으로 한다.

별표 3을 삭제한다.

별표 4 제2호다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33조제4항”을 “법 제33조제5항”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10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 대외무역법 시행령

[시행 2010. 7. 12] [대통령령 제22269호, 2010. 7. 1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대통령령 제22269호(2010.7.12)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6> 까지 생략

<57>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및 제91조제8항 본문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58> 부터 <136> 까지 생략

## 대외무역법 시행령

[시행 2009. 11. 2] [대통령령 제21806호, 2009. 11.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11월 2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지식경제부 장관 최 경 환

⊙대통령령 제21806호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다목 중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2호"를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4호"로, "같은 법 제3조제1항제13호"를 "같은 법 제3조제1항제15호"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7조제2항제6호"를 "제7조제2항제7호"로 한다.

제9조, 제12조 및 제1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통상 관련 제도 조사)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통상진흥 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7조 각 호(제2호는 제외한다)의 기관이나 단체에 해당 분야나 특정 사안에 대한 조사 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해외진출지원센터의 구성·운영 및 감독) ①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해외진출지원센터(이하 "해외진출지원센터"라 한다)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소속 임직원과 제3항에 따른 파견자로 구성한다.

②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은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해외진출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이하 "해외진출 유관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그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해외진출 유관기관의 장은 업무수행에 적합한 자를 선발하여 해외진출지원센터에 파견하여야 하며, 파견기간 중 파견근무를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해외진출지원센터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복무에 관해서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에게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제3항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3제3항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그 공무원을 파견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하며, 그 의견서를 송부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근무성적을 평정할 때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의 해외진출 지원업무 추진실적 및 해당 연도의 해외진출지원 업무추진계획을 작성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매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분기별 업무추진실적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은 보고받은 사항 중 관계 행정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지식경제부장관은 해외진출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외진출지원센터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이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13조(무역에 관한 조약의 이행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하려면 제출대상 자료 및 제출기한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제14조 및 제15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불공정무역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전산관리체제

제22조제2항 중 “제1항, 제12조”를 “제1항”으로 한다.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 법 제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란 다자간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정하는 물품의 제조·개발 또는 사용 등에 관한 기술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기술을 말한다.

제35조 및 제3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5조(전략물자의 수출허가 또는 상황허가의 면제)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략물자의 수출허가 또는 상황허가를 면제하되, 수출자는 수출 후 7일 이내에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출거래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재외공관, 해외에 파견된 우리나라 군대 또는 외교사절 등에 사용될 공용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2. 선박 또는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긴급 수리용으로 사용되는 기계, 기구 또는 부분품 등을 수출하는 경우
3. 그 밖에 수출허가 또는 상황허가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경우
제37조(전략물자 판정 관련 전문기관) 법 제20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이란 「원자력법」 제9조의5에 따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을 말한다.

제38조 및 제3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0조의2 및 제41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전략물자등의 경유·환적허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경유 또는 환적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그 허가신청서에 경유 또는 환적허가에 필요한 서류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1조의2(전략물자의 중개허가의 면제) 법 제24조제1항 단서에서 “다자간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원칙에 따른 수출허가를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법 제19조제1항의 다자간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원칙에 따라 수출국으로부터 수출허가를 받은 때
2.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에서 중개에 따른 수출이나 수입이 이루어지는 때

제46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법 제25조에 따른 전략물자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지정 및 관리에 대한 지원 업무

제47조제1항제1호 중 “「기술개발촉진법」에 따른 전략기술에 관한 사항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4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8조(허가의무 위반자 등에 대한 교육) ① 법 제49조에 따른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시간은 8시간 이내로 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9조에 따른 전략물자관리원, 제37조에 따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그 밖에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60조제2항 단서 중 “3천만원”을 “3억원”으로 한다.

제71조부터 제74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91조제3항제5호 중 “법 제59조제2항제5호 및 제6호”를 “법 제5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로, “같은 항 제6호”를 “같은 항 제3호”로 한다.

제91조제4항제4호 본문 중 “법 제33조제5항 및 법 제42조제1항제1호·제2호”를 “법 제33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법 제59조제2항제5호 및 제6호”를 “법 제5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로, “같은 항 제6호”를 “같은 항 제3호”로 한다.

제91조제6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5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산지 표시방법의 확인 및 이의제기에 대한 처리 권한

별표 1을 삭제한다.

별표 2 및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4조의2, 제25조 및 제28조제1항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② 수출보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를 삭제한다.

[별표 2]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제60조제1항 관련)

| 위 반 행 위 | 해당 법조문 | 과 징 금 금 액 |
|---|---|---|
| 1.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행위 | 법 제33조제5항 | 해당 위반물품의 수출입 신고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2억원 중 적은 금액 |
| 2.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등의 판매업자가 법 제33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물품등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誤認)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 | 법 제33조제5항 | 해당 위반물품의 수출입 신고 금액(판매업자의 경우에는 판매한 물품과 판매하지 아니한 물품을 구분하여 판매한 물품의 매출가액과 판매하지 아니한 물품의 매입가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3억원 중 적은 금액 |
| 3.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등의 판매업자가 법 제33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물품등의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 법 제33조제5항 | 해당 위반물품의 수출입 신고 금액(판매업자의 경우에는 판매한 물품과 판매하지 아니한 물품을 구분하여 판매한 물품의 매출가액과 판매하지 아니한 물품의 매입가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3억원 중 적은 금액 |
| 4. 무역거래자가 법 제33조제3항제3호를 위반하여 원산지 표시대상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 | 법 제33조제5항 | 해당 위반물품의 수출입 신고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2억원 중 적은 금액 |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9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제2호가목에 대한 과태료의 금액은 부과권자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 제2호나목 및 다목에 대한 과태료의 금액은 1천만원을 넘지 못한다.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 위반행위 | 과태료 금액기준 | | |
|---|---|---|---|
| | 1차 | 2차 | 3차 |
| 가.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서류 보관의무를 위반한 경우 | 50 | 250 | 1,000 |
| 나. 무역거래자 또는 판매업자가 원산지의 표시를 하여야 할 물품등을 수입하여 분할·재포장 또는 단순 제조가공을 거쳐 거래하거나 낱개 또는 산물(散物)로 거래할 때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상태로 판매를 목적으로 유통시킨 경우. 다만, 농산물 및 농산물가공품의 경우에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경 | 해당 물품의 판매장소 및 양도장소에서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유통시킨 물량(판매를 위한 창고 저장 물량과 이미 판매된 물량 중 확인 가능한 물량을 포함한다)에 현지의 실제거래가격을 곱한 금액이나 30만원 중 많은 금액 | 해당 물품의 판매장소 및 양도장소에서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유통시킨 물량(판매를 위한 창고 저장 물량과 이미 판매된 물량 중 확인 가능한 물량을 포함한다)에 현지의 실제거래가격을 곱한 금액이나 300만원 중 많은 금액 | 1,000 |



국가법령정보센터

| | | | |
|---|---|---|---|
| 우에는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과태료를 적용한다. | | | |
| 다. 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다만, 농산물 및 농산물가공품의 경우에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경우에는「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과태료를 적용한다. | 해당 물품의 판매장소 및 양도장소에서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유통시킨 물량(판매를 위한 창고 저장 물량과 이미 판매된 물량 중 확인 가능한 물량을 포함한다)에 현지의 실제거래가격을 곱한 금액이나 10만원 중 많은 금액 | 해당 물품의 판매장소 및 양도장소에서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유통시킨 물량(판매를 위한 창고 저장 물량과 이미 판매된 물량 중 확인 가능한 물량을 포함한다)에 현지의 실제거래가격을 곱한 금액이나 100만원 중 많은 금액 | 1,000 |
| 라. 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련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50 | 500 | 2,000 |
| 마. 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사실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30 | 300 | 1,500 |
| 바.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보고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 50 | 250 | 1,000 |
| 사.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50 | 500 | 1,500 |
| 아. 법 제49조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50 | 250 | 1,000 |

## 대외무역법 시행령

[시행 2008. 11. 5] [대통령령 제21104호, 2008. 11. 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8년 11월 5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지식경제부 장관 이 윤 호

⊙대통령령 제21104호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항 중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를 "연장할 수 있다."로 한다.

제47조제1항제1호 중 "과학기술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과학기술부장관과 산업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과학기술부장관과 산업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입 또는 수출"을 "수입"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수출입"을 각각 "수입"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34조에 따른 수출 물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을 준용하여 판정하되, 그 물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기준이 수입국의 원산지 판정기준과 다른 경우에는 수입국의 원산지 판정기준에 따라 원산지를 판정할 수 있다.

제9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제2호 중 "원산지 표시"를 "원산지"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 중 "외국환은행의 장"을 "외국환은행의 장 및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한 전자무역기반사업자"로 한다.
5. 법 제59조제2항제5호 및 제6호(같은 항 제6호는 이 항 제3호의 권한에 따른 경우에만 한정한다)의 자에 대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
7. 법 제59조제2항제5호 및 제6호(같은 항 제6호는 이 항 제3호의 권한에 따른 경우에만 한정한다)의 자에 대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

제9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4의 제목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태료의 금액(제94조제3항 관련)"을 "과태료의 부과기준(제94조 관련)"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1조제1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대외무역법 시행령

[시행 2008. 10. 20] [대통령령 제21087호, 2008. 10. 2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대통령령 제21087호(2008.10.20)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대외무역법 시행령」의 개정)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대한 결정을 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4조를 삭제한다.

제77조부터 제79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80조의 제목 "(분쟁조정 신청)"을 "(분쟁조정 신청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조정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1조제1항 본문 중 "7일 이내에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정위원회 구성 후 20일 이내에"를 "30일 이내에"로, "제시하도록 하여야"를 "제시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항을 적고, 조정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하여야"를 "사항이 포함되어야"로 한다.

제82조제1항 중 "조정위원회는"을 "지식경제부장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조정위원회에"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로 한다.

제8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정위원회는"을 "지식경제부장관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조정안"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조정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조정위원회는"을 "지식경제부장관은"으로 한다.

제8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8조(조정명령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46조에 따른 조정을 명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46조에 따른 조정을 명하는 경우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를 침해할 우려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정을 명하는 이유, 대상, 내용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91조제9항제2호 중 "제77조"를 "제80조"로, "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을 "분쟁조정, 조정비용 부담"으로 한다.

제22조부터 제5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는 200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9조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8조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무원징계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는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라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징계의결요구서는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④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2중앙징계위원회 위원은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물류관리사시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행한 사항은 이 영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모범공무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정부표창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로 한다.

②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57호를 삭제한다.

③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37호마목을 삭제한다.
④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7호를 삭제한다.
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4호를 삭제한다.

## 대외무역법 시행령

[시행 2009. 2. 4] [대통령령 제20947호, 2008. 7.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대통령령 제20947호(2008.7.2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0> 까지 생략
<41>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3항에 따른 상장법인(上場法人)"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에 따른 상장법인(코스닥시장에 증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42> 부터 <113> 까지 생략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 대외무역법 시행령

[시행 2008. 2. 29] [대통령령 제20678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대통령령 제20678호(2008.2.29)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나목부터 라목까지·제4호나목부터 라목까지·제11호·제12호, 제3조제1호차목, 제4조제2호·제3호,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제5항·제6항·제7항 전단,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 제8조제3호,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조제1항·제2항, 제1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12조, 제13조제2항제1호·제3항·제4항, 제14조,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17조, 제18조제1항 전단·제2항 단서, 제19조제1호·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마목·제3호,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나목·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제2항·제3항, 제23조제1항·제2항, 제24조제1항·제2항, 제25조제

2항·제3항, 제26조제1항제5호,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제28조제1항·제2항 전단 및 후단·제3항,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제3호·제4호, 제30조제1항·제2항제4호·제4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제2항·제3항,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호 및 제2항 본문, 제34조제4호,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제2항 본문·제4항, 제38조제1항·제2항, 제39조, 제40조제1항·제2항 본문,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호·제2항 본문, 제42조제4호, 제4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제3항,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제3호, 제4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50조 전단, 제52조제2항,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호, 제55조, 제56조제2항·제3항 본문 및 단서, 제57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 전단 및 후단, 제59조제1항·제2항 본문·제4항, 제60조제2항 본문, 제61조제2항, 제62조제1항 본문·제2항·제3항 본문·제5항, 제6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64조제3항,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6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제3항·제5항, 제68조제1항 전단·제2항·제3항, 제69조, 제74조제2항 본문, 제75조제1항 전단·제2항, 제77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마목, 제78조제2항·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제6항, 제80조제1항·제2항, 제81조제1항 본문, 제84조제1항·제2항, 제85조제1항, 제87조 전단 및 후단, 제8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호·제2항·제3항, 제90조, 제9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및 제4호·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4호·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호·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제8항 본문·제9항 각 호 외의 부분·제10항·제11항·제12항, 제92조제2항 전단 및 후단·제3항·제4항, 제94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 별지 서식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91조제8항 본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91조제5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64조제1항·제2항, 제8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⑮ 부터 <86> 까지 생략

## 대외무역법 시행령

[시행 2007. 4. 4] [대통령령 제19986호, 2007. 4.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대통령령 제19986호(2007.4.4)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39조의2 및 제3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 (다자 간 국제수출통제체제) 법 제2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자 간 국제수출통제체제"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바세나르체제(WA)
2. 핵공급국그룹(NSG)
3.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4. 오스트레일리아그룹(AG)
5. 화학무기의 개발·생산·비축·사용 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CWC)
6. 세균무기(생물무기) 및 독소무기의 개발·생산·비축 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BWC)

제39조의2 (전략물자의 수출허가 또는 상황허가의 신청 등) ①법 제2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략물자 또는 전략물자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대량파괴무기등의 제조·개발·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물품등을 수출하려는 자는 전략물자수출허가신청서 또는 상황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출계약서, 수출가계약서(輸出假契約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2. 수입국의 정부가 발행하는 수입증명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3. 수출하는 물품등의 용도와 성능을 표시하는 서류
4. 수출하는 물품등의 기술적 특성에 관한 서류
5. 그 밖에 수출허가 또는 상황허가에 필요한 서류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제1항에 따른 수출허가신청 또는 상황허가신청을 받은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수출허가 또는 상황허가의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허가 또는 상황허가를 신청한 물품등에 대하여 별도의 기술심사,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또는 현지조사가 필요한 경우 이에 소요되는 일수는 본문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9조의3 (수출허가 및 상황허가의 기준) 법 제2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해당 물품등이 평화적 목적에 사용되는지 여부
2. 해당 물품등의 수출이 안전유지 및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3. 해당 물품등의 수입자 및 최종사용자 등이 거래에 적합한 자격을 가졌는지 여부 및 그 사용 용도를 믿을 수 있는지 여부
4. 그 밖에 제39조에 따른 다자 간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원칙 중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준수하는지 여부

제40조 및 제40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4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 (전략물자의 확인의무 면제 대상) 법 제21조의2제1항 단서에서 "해당될 가능성이 없는 물품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해당 물품등이 별표 1에서 정한 분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40조의2 (전략물자의 판정신청 등) ①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해당 물품등이 전략물자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판정을 받으려는 자는 전략물자판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물품등의 용도와 성능을 표시하는 서류
2. 물품등의 기술적 특성에 관한 서류
3. 그 밖에 전략물자의 판정에 필요한 서류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신청한 물품등이 전략물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전략물자의 판정을 신청한 물품등에 대하여 별도의 기술심사 또는 다른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이에 소요되는 일수는 본문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제2항에 따른 전략물자 판정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④산업자원부장관은 전략물자 수출입통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라 전략물자로 판정된 물품등에 대하여 그 명칭, 규격, 통제번호 등 해당 물품등이 전략물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공고할 수 있다.

제40조의3 (보관대상 서류) 법 제21조의2제3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에 관한 서류
2. 법 제21조의3제2항에 따른 통보에 관한 서류

제41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41조의2 및 제4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 (전략물자의 제조·수입자의 신고) ①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라 전략물자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전략물자별로 최초 1회에만 그 전략물자의 명칭, 규격, 통제번호 등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전략물자 수출입통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전략물자에 대하여 그 명칭, 규격, 통제번호 등 해당 물품등이 전략물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공고할 수 있다.

제41조의2 (전략물자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통보) 법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전략물자를 제조 또는 수입한 자가 그 전략물자를 다른 사람에게 인도하는 때에는 그 상대방에게 그 물품등이 전략물자라는 사실 및

그 전략물자의 명칭, 규격, 통제번호 등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41조의3 (전략물자수입목적확인서의 발급 등) ①법 제21조의4에 따라 전략물자수입목적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전략물자수입목적확인서발급신청서에 그 전략물자의 최종사용자 및 사용목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전략물자 수입목적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로서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7일 이내에 전략물자수입목적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목적 확인을 신청한 물품등에 대하여 별도의 기술심사 또는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이에 소요되는 일수는 본문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2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42조의2, 제43조 내지 제43조의3 및 제44조 내지 제4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 (전략물자의 중개허가 신청 등) ①법 제21조의6제1항에 따라 전략물자를 중개하려는 자는 전략물자중개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거래계약서, 거래가계약서(去來假契約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2. 해당 중개에 관련된 수출자, 수입자, 중개자 등에 관한 서류
3. 중개하는 전략물자의 용도와 성능을 표시하는 서류
4. 중개하는 전략물자의 기술적 특성에 관한 서류
5. 그 밖에 전략물자의 중개허가에 필요한 서류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제1항에 따른 중개허가신청을 받은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중개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중개허가를 신청한 물품등에 대하여 별도의 기술심사,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또는 현지조사가 필요한 경우 이에 소요되는 일수는 본문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2조의2 (중개허가의 기준) 법 제21조의6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해당 물품등이 평화적 목적에 사용되는지 여부
2. 해당 물품등의 중개가 안전유지 및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3. 해당 물품등의 수출자, 수입자, 최종사용자 등이 거래에 적합한 자격을 가졌는지 여부 및 그 사용 용도를 믿을 수 있는지 여부
4. 그 밖에 제39조에 따른 다자 간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원칙 중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준수하는지 여부

제43조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지정 등) ①법 제21조의7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능력"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능력을 말한다.

1. 전략물자 해당 여부에 대한 판정 능력
2. 수입자 및 최종 사용자에 대한 분석 능력
3. 자율관리조직의 구축 및 운용 능력

②법 제21조의7제1항에 따라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자율준수무역거래자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2. 자율적인 수출통제업무 관리를 위한 업무규정 및 조직도
3. 그 밖에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지정에 필요한 서류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제2항에 따른 자율준수무역거래자지정신청을 받은 산업자원부장관은 40일 이내에 그 지정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3조의2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자율관리업무의 범위) 법 제21조의7제2항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은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하여금 법 제21조에 따른 전략물자의 수출허가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수출통제업무를 자율적으로 관리하게 할 수 있다.

1. 수출허가의 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류의 제출(수출 후 7일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2. 그 밖에 전략물자 수출허가 제도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제43조의3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보고) 법 제21조의7제3항에 따라 자율준수무역거래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별로 해당 기간 내에 그 현황 또는 실적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법 제21조에 따른 전략물자 수출허가의 반기별 실적 : 다음 반기 1월 이내
2. 제43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연간 현황 : 다음 해 1월 이내

제44조 (전략물자관리원의 업무) 법 제21조의11제5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전략물자 수출입관리에 관한 조사, 연구 및 홍보의 지원 업무
2. 전략물자 수출입통제와 관련된 국제협력의 지원 업무
3. 전략물자의 판정 및 통보에 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제44조의2 (전략물자수출입통제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법 제21조의12제1항에 따른 전략물자수출입통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별로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되고, 협의회의 위원장은 소관 사항별로 참석 행정기관의 범위를 정하여 협의회를 소집한다.

1. 과학기술부 : 「기술개발촉진법」에 따른 전략기술에 관한 사항 및 과학기술부장관과 산업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원자력 전용품목의 수출입통제에 관한 사항
2. 통일부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반출·반입 승인대상품목 중 전략물자에 관한 사항 및 남북교류·협력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3. 외교통상부 : 외교·통상교섭에 영향을 주는 사항 및 전략물자의 수출입통제와 관련된 국제규범에 관한 사항
4. 국방부 :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산물자·국방과학기술의 수출입통제에 관한 사항 및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5. 산업자원부 : 「대외무역법」에 따른 전략물자(과학기술부장관과 산업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원자력 전용품목을 제외한다)의 수출입통제에 관한 사항

②협의회의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소집되는 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전략물자의 수출입통제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한다.

③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④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1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⑤법 제21조의12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수사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가정보원
2. 검찰청
3. 경찰청
4. 국군기무사령부

제44조의3 (확인의무 위반자에 대한 조치) 법 제50조의2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확인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확인의무에 대한 이행계획서 제출명령
2. 법 제21조의11에 따라 설립된 전략물자관리원 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관련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8시간 이내에 한한다)의 이수 명령

제4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5조 (전략물자기술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을 하기 위하여 전략물자기술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해당 물품등이 대량파괴무기등의 제조·개발·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에 관한 사항
2. 다자 간 국제수출통제체제의 통제대상 물품등에 대한 평가·분석에 관한 사항
3. 전략물자 해당 여부의 판정에 관한 사항

②전략물자기술자문단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5조의2를 삭제한다.

제54조의4제1항중 "별표 1과"를 "별표 1의2와"로 한다.

제3장제6절에 제6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1조 (단순한 가공활동) 법 제25조의3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순한 가공활동"이라 함은 제55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단순한 가공활동의 기준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제92조제1항중 "별표 1의2와"를 "별표 1의3과"로 한다.

제116조제1항제7호를 삭제하고, 동조제4항제4호중 "제6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제60조제2항제5호 및 제6호"로 하며, 동조제5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6항제5호를 삭제한다.
2.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수입한 물품등과 관련서류의 검사에 관한 권한

제116조에 제1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⑮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제40조의2제2항에 따른 전략물자의 판정 및 통보에 관한 권한을 법 제21조의11에 따라 설립된 전략물자관리원에 위탁한다.

별표 1 및 별표 1의2를 각각 별표 1의2 및 별표 1의3으로 하고,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40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전략물자의 판정신청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화학·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중 "제21조제3항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이 공고"를 "제21조의8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로 한다.

[별표 1]

전략물자 확인의무 면제 대상(제40조 관련)

| 번호 | 통일상품 | 내용 |
|---|---|---|
| | | 분류체계 |
| | (HS) | |
| 1 | 제1류 | 산 동물 |
| 2 | 제2류 | 육과 식용설육 |

| | | |
|---|---|---|
| 3 | 제3류 | 어류·갑각류·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
| 4 | 제4류 | 낙농품·조란·천연꿀 및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아니한 식용의 동물성 생산품 |
| 5 | 제5류 |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아니한 동물성 생산품 |
| 6 | 제6류 | 산 수목과 기타의 식물, 인경·뿌리와 이와 유사한 물품 및 절화와 장식 용의 잎 |
| 7 | 제7류 | 식용의 채소·뿌리 및 괴경 |
| 8 | 제8류 | 식용의 과실 및 견과류와 감귤류 또는 멜론의 껍질 |
| 9 | 제9류 | 커피·차·마태 및 향신료 |
| 10 | 제10류 | 곡물 |
| 11 | 제11류 | 제분공업의 생산품과 맥아·전분·이눌린 및 밀의 글루텐 |
| 12 | 제12류 |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 각종의 종자와 과실, 공업용 또는 의약용의 식물, 짚과 사료용 식물 |
| 13 | 제13류 | 락·검·수지 및 기타의 식물성 액즙과 엑스 |
| 14 | 제14류 | 식물성 편조물용 재료와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아니한 식물성 생산품 |

| | | |
|---|---|---|
| 15 | 제15류 | 동식물성 유지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식용지와 동식물성의 납 |
| 16 | 제16류 | 육류·어류·갑각류·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의 조제품 |
| 17 | 제17류 | 당류와 설탕과자 |
| 18 | 제18류 | 코코아와 그 조제품 |
| 19 | 제19류 | 곡물·분·전분 또는 밀크의 조제품과 베이커리 제품 |
| 20 | 제20류 | 채소·과실·견과류 또는 식물의 기타 부분의 조제품 |
| 21 | 제21류 | 각종의 조제식료품 |
| 22 | 제22류 | 음료·알콜 및 식초 |
| 23 | 제23류 | 식품 공업에서 생기는 잔재물 및 웨이스트와 조제사료 |
| 24 | 제24류 | 담배와 제조한 담배 대용물 |
| 25 | 제41류 | 원피(모피를 제외한다)와 가죽 |
| 26 | 제42류 | 가죽제품·마구·여행용구·핸드백 및 이와 유사한 용기와 동물의 거트(누에의 거트를 제외한다)의 제품 |

| | | |
|---|---|---|
| 27 | 제43류 | 모피와 인조 모피 및 이들의 제품 |
| 28 | 제44류 | 목재와 그 제품 및 목탄 |
| 29 | 제45류 | 코르크와 그 제품 |
| 30 | 제46류 | 짚·에스파르토 또는 기타 조물재료의 제품과 농세공물 및 지조세공물 |
| 31 | 제47류 | 목재 또는 기타 섬유질 셀룰로스 재료의 펄프, 회수한 지 또는 판지(웨이스트와 스크랩) |
| 32 | 제48류 | 지와 판지, 제지용 펄프, 지 또는 판지의 제품 |
| 33 | 제49류 | 인쇄서적·신문·회화 및 기타의 인쇄물, 수제문서·타이프문서 및 도면 |
| 34 | 제50류 | 견 |
| 35 | 제51류 | 양모·섬수모 또는 조수모·마모사 및 이들의 직물 |
| 36 | 제52류 | 면 |
| 37 | 제53류 | 기타 식물성 방직용 섬유와 지사 및 지사의 직물 |
| 38 | 제57류 | 양탄자류와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바닥깔개 |

| | | |
|---|---|---|
| 39 | 제60류 | 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 편물 |
| 40 | 제66류 | 산류·지팡이·시트스틱·채찍 및 이들의 부분품 |
| 41 | 제67류 | 조제우모와 솜털 및 그 제품, 조화, 인모제품 |
| 42 | 제91류 | 시계와 그 부분품 |
| 43 | 제92류 | 악기와 그 부분품과 부속품 |
| 44 | 제96류 | 잡품 |
| 45 | 제97류 | 예술품·수집품과 골동품 |

비고 : 각 분류의 세부내용에 관하여는「관세법 시행령」제98조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에 따른다.

[별표 2]

위반행위의 종별 및 과태료금액(제118조제3항 관련)

(단위 : 만원)

| 처 분 대 상 자 | 과태료금액기준 |
|---|---|
| 1.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확인의무를 위반한 자(법 제54조제1항제1호· | 250 | 1,000 | 50 |

| | | | |
|---|---|---|---|
| 제2호, | | | 동조제2항제2호 |
| 내지 | 제2호의4 | 중 | 어느 |
| 하나에 | | 해당하는 | 경우를 |
| 제 | 외 | 한 | 다 ) |
| 2. | 법 | | 제21조의2제3항에 |
| 따른 | 250 | 1,000 | 서류보관의무를 위 |
| 반한 | | | 자 |
| 3. | 법 | | 제21조의3제1항에 따 |
| 른 | 250 | 1,000 |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 |

| | | | |
|---|---|---|---|
| | | | 50 |

| | | | |
|---|---|---|---|
| 4. 법 제21조의3제2항에 따른 통보의무를 위반한 자 | 250 | 1,000 | 5 0 |
| 5. 법 제41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련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 500 | 2,000 | 5 0 |
| 6.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300 | 1,500 | 3 0 |
| 7.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 500 | 1,500 | 5 0 |

| | | |
|---|---|---|
| 기피한 | | 자 |
| | | |
| 8. 원산지의 표시를 하여야할 물품을 수입하여 분할·재포장 또는 단순제조가공을 거쳐 거래하거나 낱개 또는 산물로 거래함에 있어서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상태로 판매를 목적으로 유통시킨 무역거래자 또는 판매업자(다만,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의 경우에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경우에는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과태료를 적용한다) | 해당 물품의 판매 및 | 해당 물품의 판매 및 | 1000 |
| 9.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다만,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의 경우에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경우에는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과태료를 적용한다) | 양도장소에서 원산지표 | 양도장소에서 원산지표 | |
| | 시를 하지 아니하고 유 | 시를 하지 아니하고 유 | |
| | 통시킨 물량(판매를 위 | 통시킨 물량(판매를 위 | |
| | 한 창고저장물량과 이 | 한 창고저장물량과 이 | |
| | 미 판매된 물량 중 확 | 미 판매된 물량 중 확 | |
| | 인가능한 물량을 포함 | 인가능한 물량을 포함 | |
| | 한다)에 현지의 실거래 | 한다)에 현지의 실거래 | |

| 가
격을 곱한 금액 또는 | 가격을 곱한 금액 또는 | | |

| 30
만원 중 많은 금액 | 300만원 중 많은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해

| 당 물품의 판매 및 | 해당 물품의 판매 및 | 1,000 |
|---|---|---|
| 양도장소에서 원산지표 | 양도장소에서 원산지표 | |
| 시를 하지 아니하고 유 | 시를 하지 아니하고 유 | |
| 통시킨 물량(판매를 위 | 통시킨 물량(판매를 위 | |
| 한 창고저장물량과 이 | 한 창고저장물량과 이 | |
| 미 판매된 물량 중 확 | 미 판매된 물량 중 확 | |
| 인가능한 물량을 포함 | 인가능한 물량을 포함 | |
| 한다)에 현지의 실거래 | 한다)에 현지의 실거래 | |
| 가격을 곱한 금액 또는 | 가격을 곱한 금액 또는 | |
| 10만원 중 많은 금액 | 100만원 중 많은 금액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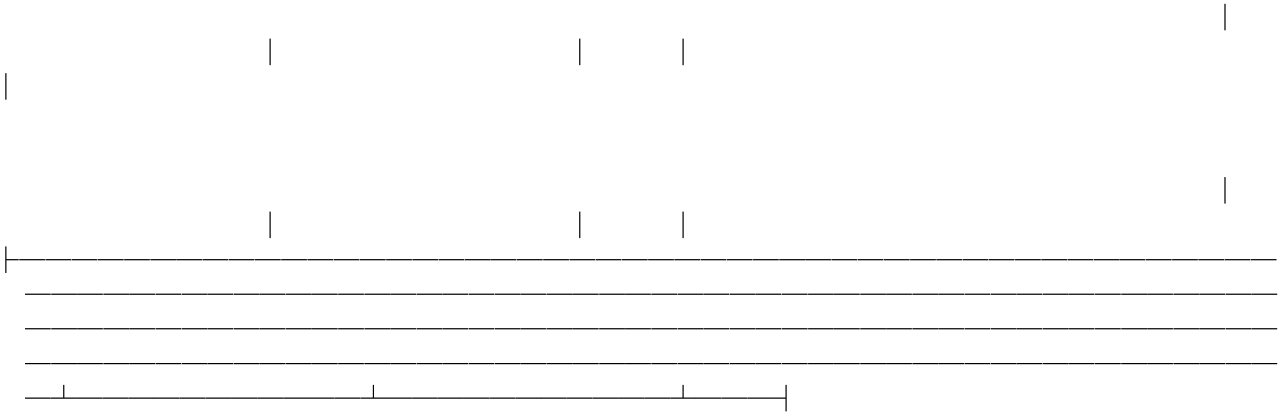

비고

1.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5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2. 제1호 내지 제4호에 대한 과태료의 금액은 부과권자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다.

3. 제8호 및 제9호에 대한 과태료의 금액은 1천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 대외무역법 시행령

[시행 2006. 7. 21] [대통령령 제19619호, 2006. 7. 2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대통령령 제19619호(2006.7.21)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무역업무자동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사업자중에서"를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전자무역기반사업자 중에서"로 한다.
제18조의5 내지 제18조의8을 각각 삭제한다.
②생략
제3조 생략

## 대외무역법 시행령

[시행 2006. 7. 1] [대통령령 제19513호, 2006. 6. 1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대통령령 제19513호(2006.6.12)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79>생략
<80>대외무역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7제3항 각호외의 부분중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81>내지 <241>생략

## 대외무역법 시행령

[시행 2006. 6. 4] [대통령령 제19494호, 2006. 5.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대통령령 제19494호(2006.5.30)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3중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기업체협의회"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수탁기업협의회"로 한다.
③내지 ⑩생략
제6조 생략

## 대외무역법 시행령

[시행 2006. 3. 10] [대통령령 제19384호, 2006. 3. 1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대통령령 제19384호(2006.3.10)
대외무역법시행령 일부개정령

대외무역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외무역법시행령"을 "대외무역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중 "각목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호 나목중 "외국환거래법"을 "「외국환거래법」"으로 하며, 동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중 "각목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10호의2 및 제10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외화획득용 원료·기재"라 함은 외화획득용 원료, 외화획득용 시설기재, 외화획득용 제품, 외화획득용 용역 및 외화획득용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말한다.
10의2. "외화획득용 용역"이라 함은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등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용역을 말한다.
10의3. "외화획득용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이라 함은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등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제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말한다.

제2조의2 각 호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중 "각목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하며, 동호 사목중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을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으로 하고, 동호 아목을 자목으로 하며, 동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운수업과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이하 "관광사업"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업종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1호중 "수입통관일"을 "수입통관일 또는 공급일"로 한다.

제3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2호중 "공고"를 "고시"로 한다.

제1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중 "각목"을 "각목"으로 하며, 동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동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동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각호"를 각각 "각 호"로 하고, 동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무역협회,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이하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라 하고, 제3호의 업무에 한한다),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선주협회(이하 "한국선주협회"라 하고, 제4호의2의 업무에 한한다)와 「관광진흥법」 제39조제1항 및 동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관광협회중앙회(제4호의3의 업무에 한한다) 및 업종별 관광협회(제4호의3의 업무에 한한다)에 위탁한다.

제116조제6항에 제4호의2 및 제4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용역 중 해운업의 수출입확인
4의3.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용역 중 관광사업의 수출입확인

제116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동조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각 "각 호"로 하고, 동조제11항 본문중 "산업발전법"을 "「산업발전법」"으로, 동항 단서중 "한국수출입은행법"을 "「한국수출입은행법」"으로 하며, 동조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조제13항중 "상공회의소법"을 "「상공회의소법」"으로, "민법"을 "「민법」"으로 한다.

제119조중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를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한국선주협회, 「관광진흥법」 제39조제1항·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관광협회중앙회·업종별 관광협회"로 한다.

제1조중 "대외무역법"을 「대외무역법」으로 한다.

제2조의3제1호중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대외무역법"을 "「대외무역법」"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을 "「무역업무자동화 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3조중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으로, "민법"을 "「민법」"으로 한다.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증권거래법"을 "「증권거래법」"으로 한다.

제18조의3중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을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8조의7제3항제2호중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으로 한다.

제24조제1호 및 제25조제1항중 "헌법"을 각각 "「헌법」"으로 한다.

제27조제4호중 "해외이주법"을 "「해외이주법」"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중 "관세법"을 각각 「관세법」으로 한다.

제48조제2항중 "해외건설촉진법시행령"을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56조제1항 본문중 "관세법시행령"을 "「관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60조의2제1항 및 동조제4항 단서중 "헌법"을 각각 "「헌법」"으로 한다.

제104조제1항 및 제2항중 "중재법"을 각각 "「중재법」"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대외무역법시행령

[시행 2005. 11. 4] [대통령령 제19118호, 2005. 11. 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대통령령 제19118호(2005.11.4)
전자거래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대외무역법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5제1항제4호중 "전자거래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자문서교환위원회"를 "「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자문서표준위원회"로 한다.

## 대외무역법시행령

[시행 2005. 7. 1] [대통령령 제18903호, 2005. 6.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대통령령 제18903호(2005.6.30)
의장법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대외무역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2호중 "의장권"을 "디자인권"으로 한다.
⑥내지 <20>생략

## 대외무역법시행령

[시행 2004. 1. 9] [대통령령 제18213호, 2004. 1. 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대통령령 제18213호(2004.1.9)
산림청과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대외무역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6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임업연구원장"을 "국립산림과학원장"으로 한다.
⑥내지 ⑧생략
제3조 생략

## 대외무역법시행령

[시행 2003. 12. 30] [대통령령 제18200호, 2003.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대통령령 제18200호(2003.12.30)
대외무역법시행령중개정령

대외무역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이하 "거주자"라 한다)의 동법 제3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에 대한 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제공으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것
다. 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제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 그 밖에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인도하는 것
제2조제4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비거주자의 거주자에 대한 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제공으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것
다. 비거주자의 거주자에 대한 제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 그 밖에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인도하는 것

제2조제8호중 "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용역 및 제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로 한다.

제2조의2를 제2조의3으로 하고,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 (용역의 범위) 법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공하는 용역
가. 경영 상담업
나. 법무관련 서비스업
다.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라.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마. 디자인
바.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자문업
사.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산업에 해당하는 업종
아. 그 밖에 지식기반용역 등 수출유망산업으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
2. 국내의 법령 또는 대한민국이 당사자인 조약에 의하여 보호되는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저작권·저작인접권·프로그램저작권·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권의 양도,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의 허락

제3조제1항에 제7호의2 및 제7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7의3. 해외에 진출한 국내기업의 애로사항의 조사와 그 해결을 위한 지원

제3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무역전시장 : 옥내 전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무역견본품의 전시시설과 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회의실을 갖출 것

제15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에 진출한 기업의 애로사항의 조사 및 해외영업활동의 지원을 위하여 해외진출기업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해외진출기업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한다.

제18조의2의 제목중 "종합무역상사"를 "종합무역상사 등"으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항(종전의 제2항) 및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종합무역상사"를 각각 "종합무역상사 또는 전문무역상사"로 한다.
②법 제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무역상사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자본금이 70억원 이상인 법인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으로 한다.
1. 첨단산업제품으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의 전년도의 수출실적이 당해 법인의 전년도의 총 수출실적의 50퍼센트 이상인 법인
2. 당해 법인이 생산하지 아니한 물품등의 전년도의 수출실적이 당해 법인의 전년도의 총 수출실적의 50퍼센트 이상인 법인

제18조의4의 제목중 "종합무역상사"를 "종합무역상사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법 제9조의2제3항"을 "법 제9조의2제4항"으로, "제18조의2제1항"을 "제1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으로, "종합무역상사"를 "종합무역상사 또는 전문무역상사"로 하며, 동조제2항중 "종합무역상사"를 "종합무역상사 또는 전문무역상사"로 한다.

제24조 각호외의 부분중 "수출·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을 "수출·수입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는"으로 한다.

제31조의2의 제목중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용역 또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용역 또는 제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로 한다.

제3장제3절의 제목중 "수입"을 "수입·구매 등"으로 한다.

제38조의2 및 제3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의2 (구매확인서의 신청·발급 등) ①법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매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구매확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구매자·공급자 및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가격·수량 등에 관한 서류
2.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임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서류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이 구매하고자 하는 원료·기재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의 범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발급여부를 결정한 후 구매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것외에 구매확인서의 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9조 (전략물자의 구분 및 수출허가 등) ①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략물자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1종전략물자 : 여러 회원국들로 구성되고, 전략물자의 수출입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하는 국제적인

협의체 또는 이와 유사한 기구(이하 "다자간전략물자수출통제체제"라 한다)에서 수출통제대상으로 지정한 물품등
2. 2종전략물자 : 대량파괴무기 및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이하 "대량파괴무기등"이라 한다)의 제조·개발·사용 및 보관 등의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물품등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략물자(이하 "전략물자"라 한다)를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전략물자수출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전략물자를 관장하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출계약서, 수출가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2. 수입국의 정부가 발행하는 수입증명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3. 수출하는 물품등의 용도와 성능을 표시하는 자료
4. 수출하는 물품등의 기술적 특성에 대한 명세서
5. 그 밖에 전략물자의 판정에 필요한 서류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서류
③산업자원부장관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허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수출허가의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허가를 신청한 물품등에 대하여 별도의 기술심사 또는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이에 소요되는 일수는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략물자수입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전략물자수입증명서발급신청서에 전략물자수입내역신고서 그 밖에 전략물자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전략물자의 범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발급여부를 결정한 후 전략물자수입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전략물자수입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물품등에 대하여 별도의 기술심사 또는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이에 소요되는 일수는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 (전략물자 사전판정) ①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등이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사전판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전략물자사전판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물품등의 기술적 특성명세서
2. 물품등의 용도와 성능을 표시하는 기술자료
3. 그 밖에 전략물자의 판정에 필요한 서류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서류
②산업자원부장관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신청한 물품등이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전략물자의 판정을 신청한 물품등에 대하여 별도의 기술심사 또는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이에 소요되는 일수는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략물자사전판정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41조중 "법 제21조제2항"을 "법 제21조제3항"으로 한다.

제4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 (전략물자기술자문단의 구성·운영)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을 받기 위하여 전략물자기술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전략물자의 기술수준 및 대량파괴무기등의 제조 등에 이용될 가능성에 관한 사항
2. 다자간전략물자수출통제체제의 통제대상물품등에 대한 평가·분석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사항
②전략물자기술자문단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한다.

제3장제4절에 제4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2 (전략물자수출입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법 제21조의2에서 "전략물자수출입관리정보시스템"이라 함은 전략물자의 수출 또는 수입의 통제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분석하기 위한 전자문서의 작성, 송신·수신 또는 저장을 위하여 이용되는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전자적 장치 또는 체계를 말한다.

②법 제2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라 함은 한국무역협회를 말한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전략물자수출입관리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자금·설비·기술 또는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59조를 삭제한다.

제3장제6절에 제6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0조의2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준 등) ①법 제2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준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이나 협정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또는 상대 수입국이 정한 원산지증명서발급기준으로 한다.

②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수출물품원산지증명서발급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구매자·공급자 및 수출물품의 가격·수량 등에 관한 서류
2. 그 밖에 수출물품의 원산지의 입증에 필요한 서류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공고하는 서류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증명서발급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조사·확인하여 발급여부를 결정한 후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이나 협정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서 그 유효기간을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으로 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에서 규정한 것외에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장의 제목 "수입에 의한 산업피해조사등"을 "수입수량제한조치 등"으로 한다.

제4장에 제1절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절 수입수량제한조치

제74조 (수입수량제한조치) ①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수입수량을 제한하는 경우 그 제한수량은 최근의 대표적인 3년간의 수입량을 연평균수입량으로 환산한 수량(이하 "기준수량"이라 한다)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근의 대표적인 연도를 정함에 있어서는 통상적인 수입량과 비교하여 수입량이 급증하거나 급감한 연도는 이를 제외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기준수량 이상으로 수입수량제한조치를 하는 경우 당해 산업의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구제하기 어렵다고 명백하게 인정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준수량 미만으로 수입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하여 제한되는 수입수량을 각 국가별로 할당할 수 있다.

제75조 (수입수량제한조치 연장 등) 산업자원부장관은 시행중인 수입수량제한조치에 대하여 무역위원회가 그 조치내용의 변경 또는 적용기간의 연장을 건의하는 때에는 그 건의가 접수된 날부터 1월 이내(연장의 경우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수량제한조치의 적용기간 종료일 이전)에 당해 조치의 변경 또는 조치기간의 연장여부를 결정하고 그 내용을 무역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6조 (특정국물품에 대한 특별수입수량제한조치의 시행 등) ①법 제2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라 함은 중화인민공화국(홍콩 및 마카오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중국"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법 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 해당되어 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시행하는 특별수입수량제한조치는 2013년 12월 10일까지, 동항제3호에 의한 경우에 해당되어 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시행하는 특별수입수량조치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4장제3절의 제목중 "수입제한조치"를 "수입수량제한조치"로 한다.

제77조·제79조 및 제80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81조 및 제8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81조 (재검토 등) ①무역위원회는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섬유수입수량제한조치(이하 "섬유수입수량제한조치"라 한다)가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등을 재검토하여 섬유수입수량제한조치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이를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의 변경 또는 해제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의가 있는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은 그 건의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섬유수입수량제한조치의 변경 또는 해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82조 (관계기관의 협조) 산업자원부장관은 섬유수입수량제한조치를 함에 있어서 해당품목의 수입통관감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6조 (조정명령의 기준) 산업자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4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조정을 명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은 미리 당해 품목을 관장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5장제2절에 제107조 및 제10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7조 (조정명령자문위원회 등) ①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역거래자에 대한 조정명령에 관한 산업자원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된 10인 이내의 조정명령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당해 품목의 수출입조합 또는 관련단체가 추천하는 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3. 관련분야를 전공한 자로서 부교수 이상인 자
4. 한국주재 외국 정부기관에 소속된 자 또는 외국상사 임원인 자
5.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경력이 있는 자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②조정명령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한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을 명하는 경우 기업의 영업비밀보호 침해우려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조정을 명하는 이유·대상·내용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08조 (증표) 법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서식에 의한다.

제1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5조 (수수료) 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16조제1항제9호 및 동조제3항제4호중 "제4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4항제2호"로 하고, 동조제5항제4호의2중 "제59조제1항"을 "제60조의2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동조제6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13항중 "제59조제1항"을 "제60조의2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4.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수출입 확인
5. 제4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략물자의 사전판정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섬유 및 의류에 대한 수입수량제한조치에 관한 적용시한) 제81조 및 제82조의 개정규정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별지 서식]

전략물자수출검사공무원증(제108조관련)

<앞 쪽>

| | |
|---|---|
| 전략물자검사공무원증 | 사 진 (2.5㎝ × 3.5㎝) |
| 소 속 :<br>직 급 :<br>성 명 :<br>주민등록번호 : | |
| 위 사람은 대외무역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략물자 수출에 관한 사항을 검사·확인할 수 있는 자임을 증명합니다. | |
| 년 월 일 | |
| 산업자원부장관 인 | |

<뒷 쪽>

1.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2. 이 사람은 대외무역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이 제한되거나 금지된 물품등이나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출하거나 수출하려고 한 자의 사무소·영업소·공장 또는 창고 등에서 장부·서류와 물건을 검사할 권한이 있습니다.
3.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외무역법시행령

[시행 2002. 12. 18] [대통령령 제17807호, 2002. 12.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대통령령 제17807호(2002.12.18)
대외무역법시행령중개정령

대외무역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1항중 "전년도의 수출통관액이 전년도의 우리나라 전체 수출통관액의 2퍼센트이상인 자로 한다"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으로 한다"로 하고, 동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전년도의 수출통관액이 전년도의 우리나라 전체 수출통관액의 2퍼센트 이상인 법인
2. 전년도의 수출실적이 미화 1백만달러 이상인 국가가 30국 이상이고, 외국에 현지법인 또는 영업소가 20개 이상인 법인

제1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5조 (수수료)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제116조제5항 및 제13항의 규정에 의한 발급기관의 장이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16조제4항제6호를 삭제한다.

제116조제5항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4호의2의 권한중 자유무역지역관리원의 관할구역안의 입주업체에 대한 권한은 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제116조제5항제4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3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위원회로부터 건의를 받아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의2.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증명서발급업무중 관세양허를 받기 위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업무에 관한 권한

제116조제13항중 "원산지증명서 발급업무중 관세양허 목적외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업무"를 "원산지증명서 발급업무(관세양허를 받기 위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업무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17조제1항을 삭제한다.

별표 1 및 별표 1의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5조, 제116조제4항제6호·동조제5항제4호의2 및 동조제13항의 개정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1]

위반행위의 종별 및 과징금의 금액(제54조의4관련)

| 위 반 행 위 | 해당법조문 | 과징금금액 |
|---|---|---|
| 1.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원산지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행위 | 법 제23조 제5항 | 당해 위반물품의 수출입 신고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2천만원중 적은 금액 |
| 2. 법 제23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등의 판매업자가 물품등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이를 오인하게 | 법 제23조 제5항 | 당해 위반물품의 수출입 신고금액(판매업자의 경우에는 판매한 물품과 판매하지 아니한 물품을 구분하여 판매한 물품의 매출가액과 판매하지 아니한 물품의 매 |

| | | |
|---|---|---|
|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 | | 입가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3천만원중 적은 금액 |
| 3.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등의 판매업자가 법 제23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물품등의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 법 제23조 제5항 | 당해 위반물품의 수출입 신고금액(판매업자의 경우에는 판매한 물품과 판매하지 아니한 물품을 구분하여 판매한 물품의 매출가액과 판매하지 아니한 물품의 매입가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3천만원중 적은 금액 |
| 4. 무역거래자가 법 제23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대하여 원산지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 | 법 제23조 제5항 | 당해 위반물품의 수출입 신고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2천만원중 적은 금액 |

[별표 1의2]

위반행위의 종별 및 과징금의 금액(제92조제1항관련)

| 위 반 행 위 | 해당법조문 | 과징금금액 |
|---|---|---|
| 1. 법 제39조제1항제2호 가목의 규정에 위반하여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이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한 물품등을 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는 행위 | 법 제39조 제5항 | 당해 위반물품의 수출입 신고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3천만원중 적은 금액 |
| 2. 법 제39조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위반하여 원산지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한 물품등을 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는 행위 | 법 제39조 제5항 | 당해 위반물품의 수출입 신고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3천만원중 적은 금액 |
| 3. 법 제39조제1항제2호 다목의 규정에 위반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한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을 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는 행위 | 법 제39조 제5항 | 당해 위반물품의 수출입 신고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2천만원중 적은 금액 |

# 대외무역법시행령

[시행 2001. 9. 1] [대통령령 제17351호, 2001. 9. 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대통령령 제17351호(2001.9.1)

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대외무역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처분대상자란 제5호 단서 및 제6호 단서중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경우에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을 각각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의 경우에는 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을,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경우에는 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으로 한다.
제7조 생략

## 대외무역법시행령

[시행 2001. 5. 10] [대통령령 제17222호, 2001. 5. 1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대통령령 제17222호(2001.5.10)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대외무역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제1절(제61조 내지 제71조) 및 제2절(제72조 내지 제76조)을 각각 삭제한다.
제77조 본문중 "수입제한조치"를 "섬유세이프가드조치"로 한다.
제78조를 삭제한다.
제7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 내지 제4항중 "수입제한조치"를 각각 "섬유세이프가드조치"로 한다.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무역위원회로부터 섬유세이프가드조치를 건의받은 때에는 1월 이내에 섬유세이프가드조치의 시행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무역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섬유세이프가드조치의 시행을 위하여 이해당사국과의 협의 등에 소요되는 기간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80조제1항 및 제3항 본문중 "수입제한조치"를 각각 "섬유세이프가드조치"로 하고, 동조제4항중 "수입제한기간"을 "섬유세이프가드조치기간"으로, "수입제한조치"를 "섬유세이프가드조치"로 한다.
제81조 및 제82조중 "수입제한조치"를 각각 "섬유세이프가드조치"로 한다.
제4장제4절(제83조 내지 제86조)을 삭제한다.
제87조제4호중 "인도"를 "인도·인수"로 하고, 동조제5호중 "분쟁을 고의적으로 야기시키는 등으로"를 "분쟁 등을 고의적으로 야기함으로써"로 하며, 동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수출입거래의 이행에 관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
가. 선하증권 등 선적서류를 허위로 발행하거나 위조·변조하는 행위
나. 선하증권 원본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입물품을 인수하는 행위
제88조 및 제8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17조제1항중 "법 제39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이 영 제87조제2호·제3호"를 "법 제39조제1항제2호"로, "법 제39조제4항"을 "법 제39조제5항"으로 한다.
별표 1의2의 제1호란 및 제5호란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2의 제3호란을 삭제한다.
②생략

# 대외무역법시행령

[시행 2001. 3. 31] [대통령령 제17186호, 2001. 3.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대통령령 제17186호(2001.3.31)
대외무역법시행령중개정령

대외무역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수출"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매매·교환·임대차·사용대차·증여 등을 원인으로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이동하는 것(우리나라의 선박에 의하여 외국에서 채취 또는 포획한 광물 또는 수산물을 외국에 매도하는 것을 포함한다)과 유상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도하는 것으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나.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이하 "거주자"라 한다)가 동법 제3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에게 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인도하는 것
4. "수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매매·교환·임대차·사용대차·증여 등을 원인으로 외국으로부터 국내로 물품을 이동하는 것과 유상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수하는 것으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나.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인수하는 것

제2조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2조제8호중 "물품을"을 "물품과 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을"로, "물품의 제조"를 "제조"로 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법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
2. 부호·문자·음성·음향·이미지·영상 등을 디지털방식으로 제작하거나 처리한 자료 또는 정보 등으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3. 제1호 및 제2호의 집합체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제2장에 제18조의5 내지 제18조의8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5 (전자무역중개기관의 지정기준) ①법 제9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무역중개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보통신망을 통한 무역거래의 알선이나 전자무역문서의 전달(이하 "전자무역중개업무"라 한다)을 주된 업무로 하고, 지정신청일 현재 전자무역중개업무를 6월 이상 수행하고 있을 것
2. 전자무역중개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운영시스템을 갖출 것
3. 전자무역에 관한 무역거래자의 교육·홍보·자문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이를 수행하고 있을 것

4. 전자거래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자문서교환위원회에서 제정·고시한 표준전자문서를 사용하고 있을 것

②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운영시스템 및 계획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제18조의7의 규정에 의한 전자무역중개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자원부장관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제18조의6 (전자무역중개기관의 지정신청 및 지정절차 등) ①전자무역중개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무역중개기관 지정신청서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전자무역중개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자가 제18조의5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전자무역중개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자무역중개기관으로 지정하고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전자무역중개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고, 전자무역중개기관의 명단을 비치하여 누구든지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외에 전자무역중개기관의 지정신청 및 지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제18조의7 (전자무역중개기관운영위원회의 구성) ①전자무역중개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에 전자무역중개기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자원부의 2급 또는 3급 공무원으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자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산업자원부 및 정보통신부 소속의 4급 또는 5급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한 자 각 1인
2. 전자무역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중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④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8조의8 (운영위원회의 회의 등) ①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가 이를 정한다.

제3장제1절(제19조 내지 제22조)을 삭제한다.

제30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무역거래자별 고유번호(이하 "무역업고유번호"라 한다)의 부여 및 관리 등 수출입통계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을 위한 전산관리체제

제31조제1항제1호중 "성명·무역업신고번호등"을 "성명 등"으로 한다.

제3장제2절에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수출입확인)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수출입한 자가 수출입 관련지원을 받기 위하여 수출입사실의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출입확인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확인에 필요한 세부절차 등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제33조제3항중 "품목 및 소요량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 기타 외화획득의 관련된 증명에 관하여"를 "품목별 소요량에 관한 계산서의 작성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로 한다.

제36조제2항 전단중 "수입한"을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승인을 얻어 수입한"으로 한다.

제37조제4호중 "수입승인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등"을 "수입승인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그 수입에 대응하는

외화획득의 이행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 등"으로 한다.

제3장제3절에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 (구매확인서의 발급 등)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물품등을 구매하고자 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영세율적용 등을 받기 위하여 그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물품등을 구매하는 것임을 확인하는 서류(이하 "구매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물품등의 구매여부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구매확인서의 신청절차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제53조의 제목중 "수입물품"을 "수출입물품"으로 하고, 동조제3항 단서중 "수입물품으로부터 소비자를"을 "소비자를"로 하며, 동조제4항중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을 단순가공(제5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실질적 변형을 발생시키지 아니한 가공을 말한다)함으로써"를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대하여 단순한 가공활동을 수행함으로써"로,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 내지 제3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수출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에 정한 방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되, 당해 물품에 대한 수입국의 원산지표시규정이 이와 다르게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하여 원산지 표시를 할 수 있다. 다만, 수입한 물품에 대하여 국내에서 단순한 가공활동을 수행하여 이를 수출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4조의 제목중 "사전확인"을 "확인"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을 수입하는 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통관시 제53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표시방법 및 표시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확인방법·절차 등에 관하여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제54조의2 내지 제54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조의2 (원산지표시위반물품에 대한 시정조치) ①법 제2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원산지표시의 원상복구·정정·말소 또는 원산지 표시명령
2. 위반물품의 거래 또는 판매행위의 중지

②법 제2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명령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2. 시정조치명령의 사유 및 내용
3. 시정기한

제54조의3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2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자는 납부통지일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납부한 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과징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제54조의4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①법 제2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당해 무역거래자 등의 수출입의 규모, 위반행위의 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55조의 제목·동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중 "수입물품"을 각각 "수출입물품"으로 하고, 동조제1항제3호중 "수입물품"을 "수출입물품"으로, "최소한의 가공활동(이하 "최소가공"이라 한다)"을 "단순한 가공활동"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최소가공"을 "단순한 가공활동"으로 한다.

제58조제1항 내지 제4항을 각각 제2항 내지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 판정의 이의제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에 원산지판정위원회를 둔다.

제59조중 "교역상대국의 관세양허를 받기 위하여 수출하는 물품"을 "수출물품"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준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제87조제1호·제4호중 "물품"을 각각 "물품등"으로 하고, 동조제6호중 "수입물품"을 "수입물품등"으로 하며, 동조제2호·제3호·제5호 단서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9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0조 (시정조치명령의 준용) 법 제3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의 내용 및 그 통지방법에 관하여는 제54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1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절차의 준용) 법 제3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에 관하여는 제54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2조중 "별표 1과"을 "별표 1의2와"로 한다.

제93조를 제5장제1절에서 삭제하고, 동조를 제5장제2절에 신설한다.

제5장제2절의 제목 "선적전검사와 관련한 분쟁조정등"을 "분쟁조정 등"으로 한다.

제93조제1항중 "수출조합·수입조합·수출입조합 기타 수출·수입"을 "수출입조합 기타 수출·수입"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의견조정"을 "조정"으로 한다.

제95조제1항중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자와 선적전검사기관사이에"를 "법 제41조제4항 및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거래자간 또는 수출자와 선적전검사기관사이에"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중 "20인이내"를 "10인 이내"로 하며, 동항제2호중 "20인이내"를 "30인 이내"로 한다.

제9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위원은 조정위원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조정위원후보중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위촉하며,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그중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제97조제5항중 "분쟁당사자"를 "분쟁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으로 하고, 동조제6항중 "조언을 받을 수 있으며"를 "조언을 받거나 관계 전문기관에 감정·검사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로 하며, 동조제7항중 "당사자들에게"를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로 한다.

제98조제1항중 "선적전검사와"를 "무역거래 또는 선적전검사와"로, "법 제42조제2항"을 "법 제41조제4항 또는 법 제42조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99조를 삭제한다.

제100조제1항 본문중 "3일내"를 "7일 이내"로, "7일내"를 "20일 이내"로 한다.

제104조제1항중 "중재법 제4조제3항"을 "중재법 제40조"로, "지명하는"을 "지정하는"으로 한다.

제106조중 "수출조합·수입조합·수출입조합 또는 관련협회 등 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수출조합·수입조합·수출입조합 또는 협회등 단체를"을 "수출입조합 또는 관련협회 등 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수출입조합 또는 협회 등 단체를"로 한다.

제116조제1항 본문중 "대상물품"을 "대상 물품등"으로, "당해 물품"을 "당해 물품등"으로 하고, 동항 단서중 "물품"을 "물품등"으로 하며, 동항제9호중 "보고"를 "자료의 제출요청"으로 한다.

제116조제2항을 삭제하고, 동조제3항 본문중 "물품"을 "물품등"으로 하며, 동항제3호 및 제4호중 "보고"를 각각 "자료의 제출요청"으로 한다.

제116조제4항 본문중 "물품"을 "물품등"으로 하고, 동항 단서중 "수출자유지역관리소"를 "자유무역지역관리원"으로, "수출자유지역관리소장"을 "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으로 하며, 동항제1호를 삭제하고, 동항에 제3호의2·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법 제2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명령 또는 과징금부과에 관한 권한중 국내유통중인 물품에 관한 권한

5. 제3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이행기간의 연장에 관한 권한

6.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업무중 관세양허를 받기 위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업무

제116조제5항제2호중 "권한"을 "권한(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권한을 제외한다)"로 하고, 동항제3호를 삭제하며, 동항제4호중 "법 제39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이 영 제87조제2호·제3호의"를 "법 제23조제5항 및 법 제39조제1항제1호·제2호의"로 하고, 동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5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표시의 확인에 관한 권한

7.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증명서의 제출명령에 관한 권한 제116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한국무역협회 또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제3호의 업무에 한한다)에 위탁한다.

1.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역업고유번호의 부여 및 관리 등 수출입통계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을 위한 전산관리체제의 개발·운영

2.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거래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3.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수출입확인

제116조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16조제9항제1호중 "제54조"를 "제56조 및 제57조"로 하고, 동항제2호중 "보고"를 "자료의 제출요청"으로 한다.

제116조제10항 본문중 "수출입승인대상물품"을 "수출입승인대상물품등"으로 한다.

제116조제11항중 "공업발전법 제23조"를 "산업발전법 제38조"로, "한국기계공업진흥회(이하 "한국기계공업진흥회"라 한다)에게"를 "한국기계산업진흥회(이하 "한국기계산업진흥회"라 한다)에"로 한다.

제116조제12항제1호중 "의견조정"을 "조정"으로 한다.

제116조에 제13항 및 제1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⑬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업무 중 관세양허 목적외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업무를 상공회의소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공회의소"라 한다) 또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중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에게 위탁한다.
⑭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구매확인서의 발급 및 사후관리에 관한 권한을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위탁한다.

제117조제2항중 "제116조제4항제4호 또는 동조제5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을 "제116조제4항제3호의2·제4호, 제5항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로 한다.

제119조중 "한국무역협회·한국무역대리점협회·한국외국기업협회·제116조제10항의 규정에의하여 지정된 단체·한국기계공업진흥회 및 대한상사중재원을"을 "한국무역협회,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제11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단체, 한국기계산업진흥회, 대한상사중재원, 대한상공회의소 및 제116조제1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법인을"으로 한다.

제2조제9호·제10호, 제4조제1항, 제24조, 제25조제1항, 제26조, 제27조, 제28조제1항 본문·제2호·제3호,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제2항, 제34조제1항제2호·제5호, 제35조제1항제2호·제3호, 제36조제1항, 제38조제1항·제2항제2호·제3항 본문·제1호·제4항 및 제116조제1항제4호 본문중 "물품"을 각각 "물품등"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외국간행물수입배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무역업고유번호를 증명하는 서류(대외무역법시행령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업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에 한한다)
별지 제4호서식(1)의 구비서류란의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무역업고유번호를 증명하는 서류(대외무역법시행령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업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에 한합니다) 1부
②해외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외무역법시행령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업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
③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무역업자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대외무역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무역거래자를 말한다.
제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호를 삭제한다.
1. 대외무역법시행령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역업고유번호의 부여기관
④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1호, 제57조제3호 및 제64조제3항제1호의2중 "구매승인서"를 각각 "구매확인서"로 한다.
⑤주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7조제2항제1호중 "구매승인서"를 각각 "구매확인서"로 한다.

[별표 1]

위반행위의 종별 및 과징금의 금액(제54조의4관련)

(단위 : 만원)

| 위 반 행 위 | 해당 법조문 | 과징금 금 액 |
|---|---|---|
| 1.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을 수출입하는 자가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때 | 법 제23조제1항 | 2,000 |
| 2.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등의 판매업자가 물품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이를 오인하게 표시한 때 | 법 제23조제3항제1호 | 3,000 |
| 3.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등의 판매업자가 물품의 원산지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한 때 | 법 제23조제3항제2호 | 3,000 |
| 4. 무역거래자가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대하여 원산지표시를 하지 아니한 때 | 법 제23조제3항제3호 | 2,000 |

[별표 1의2]

위반행위의 종별 및 과징금의 금액(제92조관련)

(단위 : 만원)

| 위 반 행 위 | 해당 법조문 | 과징금 금 액 |
|---|---|---|
| 1. 국내의 법령 또는 대한민국이 당사자인 조약에 의하여 보호되는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저작권·저작인접권·프로그램저작권·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권·지리적표시 및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물품등(이하 "지적재산권침해물품등"이라 한다)을 수입하거나 수입된 지적재산권침해물품등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행위를 한 때, 지적재산권침해물품등을 수출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국내에서 제조하는 행위를 한 때와 다른 자로 하여금 이와 같은 위반행위를 행하도록 한 때 | 법 제39조제1항제1호 | 3,000 |
| 2.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오인하게 표시한 물품을 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를 한 때와 다른 자로 하여금 이와 같은 위반행위를 행하도록 한 | 법 제39조제1항제2호 가목 | 3,000 |

| | | |
|---|---|---|
| 때 | | |
| 3. 원산지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한 물품을 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를 한 때와 다른 자로 하여금 이와 같은 위반행위를 행하도록 한 때 | 법 제39조제1항 제2호 나목 | 3,000 |
| 4.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대하여 원산지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를 한 때와 다른 자로 하여금 이와 같은 위반행위를 행하도록 한 때 | 법 제39조제1항 제2호 다목 | 2,000 |
| 5. 수출입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제87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 | 법 제39조제1항 제3호 | 1,000 |

## 대외무역법시행령

[시행 2001. 1. 1] [대통령령 제17048호, 2000. 1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재정경제부령 제17048호(2000.12.29)
관세법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대외무역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중 "관세법 제137조"를 각각 "관세법 제241조"로 한다.
제56조제1항 본문중 "관세법시행령 제53조의5"를 "관세법시행령 제98조"로 한다.
⑧내지 <20>생략
제8조 생략

## 대외무역법시행령

[시행 2000. 7. 29] [대통령령 제16920호, 2000. 7. 2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대통령령 제16920호(2000.7.27)
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대외무역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7호의2 및 동조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 대외무역법시행령

[시행 1999. 7. 1] [대통령령 제16444호, 1999. 6.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대통령령 제16444호(1999.6.30)
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대외무역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5호 및 제6호중 "농수산물의 경우는 농림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이 각각 고시한 기준"을 각각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경우에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으로 한다.

## 대외무역법시행령

[시행 1999. 5. 24] [대통령령 제16351호, 1999. 5. 2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대통령령 제16351호(1999.5.24)
산업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대외무역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6조제3항 본문중 "국립기술품질원장"을 "기술표준원장"으로 한다.
⑧내지 ⑮생략

## 대외무역법시행령

[시행 1999. 5. 13] [대통령령 제16308호, 1999. 5. 1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대통령령 제16308호(1999.5.13)
산업발전법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대외무역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10호중 "공업발전법"을 "산업발전법"으로 한다.
제116조제11항중 "공업발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기계공업진흥회"를 "산업발전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기계공업진

흥회"로 한다.
⑨내지 <16>생략
제1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부칙 제2조에서 폐지되는 대통령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폐지되는 대통령령 또는 그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대외무역법시행령

[시행 1999. 3. 17] [대통령령 제16191호, 1999. 3.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대통령령 제16191호(1999.3.17)
대외무역법시행령중개정령

대외무역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개시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고, 조사를 개시한 날부터 1년이내에 이를 종료하여야 한다.

제5조 내지 제1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3조중 "통상산업부장관"을 "산업자원부장관"으로, "지방자치단체·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한국무역협회"를 "지방자치단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의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라 한다),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무역협회(이하 "한국무역협회"라 한다)"로 한다.

제2장에 제18조의2 내지 제18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 (종합무역상사의 지정기준등) ①법 제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무역상사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증권거래법 제2조제13항의 규정에 의한 상장법인으로서 전년도의 수출통관액이 전년도의 우리나라 전체 수출통관액의 2퍼센트이상인 자로 한다.
②종합무역상사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종합무역상사를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8조의3 (수탁기업체협의회의 구성) 산업자원부장관은 종합무역상사와 중소기업과의 계열화를 통한 중소기업의 무역활동지원을 위하여 종합무역상사별로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기업체협의회를 구성·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의4 (종합무역상사의 지정취소) ①법 제9조의2제3항에서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라 함은 2년이상 계속하여 제1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여 종합무역상사로서의 무역활동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를 말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종합무역상사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20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제23조를 삭제한다.

제25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28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29조를 삭제한다.

제30조제1항 본문중 "통상산업부장관"을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하고, 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3호 나목 및 제4호중 "통상산업부장관"을 각각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한다.

2. 법 제39조제1항 각호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전산관리체제

제42조 내지 제44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제3호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외건설촉진법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해외공사 실적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은 산업설비수출업자 또는 수출용기자재를 설계·제작하는 자가 제작한 기계 및 장치를 직접 설치하는 공사를 산업설비설치공사로 인정할 수 있다.

제50조를 삭제한다.

제58조의 제목중 "구성"을 "구성·운영"으로 하고, 동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원산지판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산지판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7조제1항 후단중 "비밀이 아닌 요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를 "공개가능한 요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요약서의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항제2호중 "개별거래선의 판매가격"을 "개별거래선의 명칭·주소·판매가격"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내부회계에 관한 자료"를 "공표되지 아니한 회계에 관한 자료"로 하고, 동항제5호중 "기업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자료"를 "기업손실을 초래하는 등 비밀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로 한다.

제91조제1항중 "통상산업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의"를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39조제5항의"로 한다.

제107조를 삭제한다.

제6장(제108조 내지 제113조)을 삭제한다.

제116조제1항 본문·단서 및 제4호 본문중 "통상산업부장관"을 각각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하고, 동항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하며, 동조제2항중 "통상산업부장관"을 각각 "산업자원부장관"으로, "제107조제4호"를 "법 제43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116조제5항 본문중 "통상산업부장관"을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법 제17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 이행사항의"를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 승인면제의"로 하며, 동조제6항 본문중 "통상산업부장관"을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하고, 동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통계데이터베이스등 무역정책수립을 위한 전산관리체제의 개발·운영
5.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거래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제116조제7항 본문중 "통상산업부장관"을 각각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하고, 동항제4호를 삭제하며, 동조제8항 본문중 "통상산업부장관"을 각각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한국수출외국기업협회"를 각각 "한국외국기업협회"로 하고, 동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116조제10항 본문중 "통상산업부장관"을 각각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하고, 동항제2호를 삭제하며, 동항제4

호중 "통상산업부장관"을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하고, 동조제1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13항을 삭제한다.

⑪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설비수출의 승인 및 변경승인(일괄수주방식에 의한 수출로서 노동부장관과 건설교통부장관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한 권한을 공업발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기계공업진흥회(이하 "한국기계공업진흥회"라 한다)에게 위탁한다. 다만, 연불금융지원의 경우에는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에 위탁한다.

제119조중 "한국수출외국기업협회"를 "한국외국기업협회"로, "한국기계공업진흥회·대한상사중재원 및 제116조제1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기관을"을 "한국기계공업진흥회 및 대한상사중재원을"로 한다.

제2조제3호·제4호·제11호·제12호, 제3조제1항 본문·제2항 본문, 제4조제1항 내지 제4항·제6항·제7항, 제14조제3호, 제15조, 제16조제1항·제2항, 제17조제1항 내지 제5항, 제18조, 제19조제1항 전단, 제20조제3항, 제21조제1항·제2항, 제22조제2항·제3항, 제24조제1호 내지 제4호, 제25조제1항, 제26조제1항 전단·제2항 단서, 제27조제1호·제2호 본문·동호 라목·제3호, 제28조제1항 본문·제2항·제3항, 제30조제2항, 제31조제1항 본문·동항제2호·제2항·제3항, 제32조제1항·제2항, 제33조제2항·제3항, 제34조제1항제5호, 제35조제1항 본문·제2항·제3항, 제36조제1항·제2항 전단·동항 후단·제3항, 제37조 본문·제3호·제4호, 제38조제1항·제2항제4호·제4항, 제39조, 제40조제1항, 제41조, 제45조제1항 본문·동항제2호·제2항 내지 제4항, 제46조, 제49조제1항 본문·제2항, 제51조제1항 본문·제2항 본문·동항제3호, 제52조, 제53조제2항·제3항 전단·동항 후단, 제54조제1항 내지 제3항, 제55조제2항, 제56조제1항 본문·제2항·제3항 본문·제5항, 제57조제1항 내지 제4항, 제58조제2항, 제59조, 제60조제1항·제2항, 제78조제1항 내지 제3항, 제79조제1항 본문·제2항·제3항 본문·제4항, 제80조제1항·제2항·제3항 본문·제4항, 제81조제1항·제2항, 제82조, 제91조제2항 본문·제4항, 제92조제2항 본문, 제93조제1항 전단·제2항, 제95조제1항·제2항 본문·동항제3호 마목, 제96조제2항 본문·동항제1호·제5항·제6항, 제98조제1항·제3항, 제100조제1항 본문, 제103조제1항·제2항, 제104조제1항, 제106조, 제116조제3항 본문·제4항 본문·제9항 본문·동항제3호·제12항 본문, 제117조제1항·제3항 전단·동항 후단·제4항·제5항 및 제118조제2항 전단·제3항중 "통상산업부장관"을 각각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제4호중 "외무부장관"을 각각 "외교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58조제2항중 "통상산업부"를 "산업자원부"로 한다.

별표 1 제5호란을 삭제한다.

별표 2 제7호란을 삭제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대외무역법시행령

[시행 1999. 3. 1] [대통령령 제16139호, 1999. 2. 2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대통령령 제16139호(1999.2.27)
군납에관한법률시행령폐지령

[본문 생략]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대외무역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2호중 "군납에관한법률에 의한 주한 국제연합군"을 "주한 국제연합군"으로 한다.

## 대외무역법시행령

[시행 1999. 2. 26] [대통령령 제16131호, 1999. 2. 2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대통령령 제16131호(1999.2.26)
공업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대외무역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
④내지 ⑩생략

## 대외무역법시행령

[시행 1999. 1. 29] [대통령령 제16093호, 1999. 1.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대통령령 제16093호(1999.1.29)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대외무역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4호·제5호·제9호 및 제11호를 각각 삭제하며, 동항제12호중 "생산기술연구원 및 민간생산기술연구소"를 "민간생산기술연구소"로 한다.
3.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⑫내지 <47>생략

## 대외무역법시행령

[시행 1999. 1. 1] [대통령령 제16081호, 1998.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대통령령제16,081호(1998·12·31)
한국석유개발공사법시행령중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대외무역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3호중 "한국석유개발공사법"을 "한국석유공사법"으로, "한국석유개발공사"를 "한국석유공사"로 한다.
⑥내지 ⑭생략

## 대외무역법시행령

[시행 1998. 12. 10] [대통령령 제15936호, 1998. 12. 1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대통령령제15,936호(1998·12·10)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

[본문 생략]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대외무역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이하 "수출지원센터"라 한다)의 설치·운영
제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수출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대외무역법시행령

[시행 1998. 1. 1] [대통령령 제15598호, 1997.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대통령령제15,598호(1997·12·31)
대외무역법시행령중개정령

대외무역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4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대외무역법시행령

[시행 1995. 7. 6] [대통령령 제14716호, 1995. 7.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대통령령제14,716호(1995·7·6)
대외무역법시행령중개정령

대외무역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중 "상공자원부장관은 법 제3조의"를 "통상산업부장관은 법 제3조제1항의"로 하고, 동조제6호를 제7호로 하며, 동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무역관련시설에 대한 조세 등의 감면

제2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이 되는 무역관련시설은 다음 각호의 기능 및 규모를 갖춘 시설로서 통상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무역전시장 : 국제적인 견본전시가 가능한 시설로서 전시용으로 사용되는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이상일 것
2. 무역연수원 : 무역전문인력의 양성이 가능한 시설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이상이고 최대수용인원이 500명이상일 것.

제5조제8호중 "수출할 물품의 구매와 이에 부대되는 행위"를 "수출할 물품의 구매와 구매알선 및 이에 부대되는 시장조사 등의 행위"로 한다.

제10조제2항제12호중 "중소기업의경영안정및구조조정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을 "공업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로 하고, 동조제3항중 "5만달러 상당액이하의 물품의 수출로서 상공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것"을 "10만달러 상당액이하의 물품의 수출로서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중 "지위승계기준등"을 "지위승계"로 하고, 동조제2항중 "상공자원부장관"을 각각 "통상산업부장관"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상공자원부장관"을 "통상산업부장관"으로, "제1항의 기준"을 "법 및 이 영에 의한 기준"으로 한다.

제16조제2항중 "상공자원부장관"을 "통상산업부장관"으로, "중소기업계열화촉진법에의한 수급기업체협의회"를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수탁기업체협의회"로 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 (물품매도확약서의 발행등) ①갑류무역대리업의 신고를 한 자는 신고한 범위안에서 물품매도확약서를 발행할 수 있다.
②무역대리업의 신고를 한 자가 외국의 수입업자로 부터 수수료를 받고 행한 수출알선은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행위로 본다.

제20조를 삭제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무역대리업신고의 절차) ①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대리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통상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무역대리업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법 제14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사항은 무역대리업자의 상호·주소·대표자 또는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는 거래선의 변경으로 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 (무역대리업 신고사항의 확인) ①통상산업부장관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대리업을 신고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2년마다 무역대리업자의 신고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②통상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무역대리업자로 하여금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통상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의 확인 결과 무역대리업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폐업한 경우 기타 법에 규정된무역대리업자로서의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역대리업신고의 효력이 상실되었음을 당해 무역대리업자, 외국환은행의 장 기타 필요한 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의2 본문중 "상공자원부장관"을 "통상산업부장관"으로 하고, 동조제1호중 "법 제14조제3항"을 "법 제14조제2항"으로 한다.

제23조, 제24조 및 제25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25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의3 (수출승인 의제) ①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는 물품을 수출하는 자는 관세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신고를 한 날에 법 제1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수출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②통상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승인이 의제되는 물품을 정함에 있어서는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공고,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공고 및 이 영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 의하여 수출이 제한 또는 금지되지 아니하는 물품중에서 정하여야 한다.

제36조제1항 본문중 "제25조의2제2항 및 제25조의3"을 "제25조의3"으로 하고, 동항 단서중 "상공자원부장관"을 "통상산업부장관"으로 하며,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수입승인의 유효기간내에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공고,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공고 및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 의하여 새로이 수입이 제한된 경우 그 제한되는 날이전에 수입승인을 얻은 분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이 적용된다.

제37조의2 본문중 "상공자원부장관"을 "통상산업부장관"으로 하고, 동조 제1호를 삭제한다.

제38조제1항 본문중 "상공자원부장관"을 "통상산업부장관"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미화 5천달러상당액이하인 경우"를 "미화 3만달러 상당액이하인 경우(위탁판매방식의 수출에 있어서는 수출대금의 미결제금액이 미화 3만달러 상당액이하이거나 수출대금의 10퍼센트이하인 경우)"로 하며, 동조제2항 본문중 "상공자원부장관은 제25조의2제2항 및 제2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어"를 "통상산업부장관은 제2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는"으로 한다.

제39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동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수출보험사고로 보험을 지급받은 수출건에 관하여 한국수출보험공사가 대금회수가 불가능함을 확인한 경우

제48조의7제2항 본문중 "상공자원부"를 "통상산업부"로, "상공자원부장관"을 "통상산업부장관"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경제기획원"을 "재정경제원"으로, "상공자원부·체신부"를 "통상산업부·정보통신부"로, "2급 또는 3급공무원"을 "국장급 직위에 있는 공무원"으로 하며, 동항제2호중 "상공자원부장관"을 "통상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51조제2항 본문중 "상공자원부장관"을 "통상산업부장관"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제26조제1항제2호"를 "제20조제1항"으로 하며, 동항제2호중 "제13조"를 "제18조제1호"로 한다.

제54조, 제56조 내지 제58조, 제61조 내지 제63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63조의2제5항중 "원산지표시 여부에 대하여 상공자원부장관의"를 "원산지표시 및 표시의 손상·변경여부에

대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의"로 하고, 동조제6항중 "상공자원부장관"을 "통상산업부장관"으로, "원산지표시방법의 적정성 및 원산지표시여부의 확인등"을 "원산지표시 및 표시방법의 적정성, 표시의 손상·변경여부를 확인하기"로 한다.

제4장의 제목중 "조사"를 "조사등"으로 한다.

제69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특정한 물품의 수입등이 관련 국내산업의 심각한 피해 또는 피해우려의 원인이 되는지의 여부

제72조제2항제3호 및 동조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7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2조의2 (구제조치의 시행등) ①법 제3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구제조치의 기간은 4년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무역위원회가 제7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제조치의 연장을 건의하는 때에는 잠정조치를 포함한 구제조치의 총기간이 8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법 제3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구제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동안에도 그 구제조치의 내용이 점차적으로 경감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법 제3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제조치중 수입물품의 수량을 제한하고자 하는 때에는 심각한 피해를 방지 또는 구제하기 위한 다른 수준이 명백하게 제시되지 아니하는 한 최근 대표적인 3년간의 수입수량의 평균이하로 제한할 수 없다.

④법 제3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구제조치가 취하여진 수입물품과 동일한 수입물품에 대하여는 그 구제조치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당해 구제조치가 시행되었던 기간만큼의 기간이 경과되기 전(구제조치가 시행되었던 기간이 2년미만인 경우에는 2년이 경과되기 전)에는 다시 법 제3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구제조치를 할 수 없다. 다만, 당해 수입물품에 대한 구제조치가 취하여진 날부터 1년이 경과되었고 최근 5년동안에 2회를 초과하여 구제조치가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행기간을 180일이내로 하여 구제조치를 할 수 있다.

제7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4조 (재검토등) ①무역위원회는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행한 구제조치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중간시점이전 120일내에 당해 구제조치의 변경 또는 해제를 위한 재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피해조사를 신청하였던 자가 그에 따른 구제조치기간 종료 120일이전까지 구제조치기간의 연장을 신청하거나 무역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무역위원회는 그 기간의 연장을 위한 재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검토 결과 당해산업의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치유하기 위하여 구제조치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무역위원회는 구제조치기간 종료 45일전까지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동 조치의 연장을 건의할 수 있다.

④무역위원회는 재검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업피해조사의 대상이 되었던 국내산업을 관장하는 관계행정기관의 장,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수입실적이나 국내산업의 생산동향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절의2 (제74조의2 내지 제74조의8)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절의2 섬유 및 의류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

제74조의2 (대상품목) 법 제36조2의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품목은 섬유및의류에관한협정부속서에 규정된 것으로 한다. 다만,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T.1994)체제로 복귀되는 품목을 제외한다.

제74조의3 (섬유 및 의류산업의 피해조사) ①통상산업부장관은 법 제3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제한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무역위원회에 국내산업의 피해를 조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무역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산업부장관으로부터 조사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64조 내지 제70조의 규정에 준하여 국내산업피해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제74조의4 (판정결과의 통보) 무역위원회는 제74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피해조사를 한 때에는 판정일부터 15일이내에 그 결과를 통상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4조의5 (이해관계국과의 협의등) ①통상산업부장관은 무역위원회로부터 국내산업에 미치는 피해가 있다고 통보를 받은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45일이내에 수입제한조치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해당사국과의 협의 또는 수입제한조치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30일의 기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통상산업부장관은 수입제한조치의 시행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국제통상관계를 참작하여야 한다.

③통상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제한조치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결정전에 수입제한조치로 인하여 영향을 받게 될 국가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해당산업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해당국가와 협의하기 전에 수입제한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조치일부터 5일이내에 해당국가에 협의요청을 하고 세계무역기구섬유감시기구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에서 산업의 피해효과를 제거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에 대하여 상호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통상산업부장관은 이를 수입제한조치가 취하여진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74조의6 (수입제한조치의 시행) ①통상산업부장관은 수입제한조치의 대상국가를 지정하여 국가별로 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할 수 있다.

②통상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할 때에는 섬유및의류에관한협정 제6조제6항에 규정된 개별국가의 이해를 특별히 참작하여야 한다.

③통상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제한조치를 하는 경우 최초 1년간의 수입수준은 당해 국가에 협의를 요청한 달이전 2월전부터 소급하여 12월 동안의 해당국가로 부터의 수입량이상이어야 하며, 동 조치가 1년이상 지속될 경우 최초 1년간이후의 기간동안에는 수입량이 매년 6퍼센트이상씩 증가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제한수준에 대하여 세계무역기구 섬유감시기구에 의하여 달리 정당화되는 경우에는 수입량의 증가폭을 6퍼센트미만이 되도록 할 수 있다.

④법 제3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입제한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수입제한조치가 시행되는 기간중에 당해품목이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T.1994)체제로 복귀되는 경우에는 통상산업부장관은 지체없이 수입제한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74조의7 (재검토등) ①무역위원회는 수입제한조치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분석 등을 재검토하여 수입제한조치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이를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의 변경 또는 해제를 통상산업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의가 있는 경우 통상산업부장관은 그 건의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수입제한조치의 변경 또는 해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74조의8 (관계기관의 협조) 통상산업부장관은 법 제3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입제한조치를 함에 있어서 해당품목의 수입통관감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6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80조제2항중 "상공자원부장관"을 "통상산업부장관"으로, "무역업 및 무역대리업의 정지"를 "무역업의 정지"로, "당해무역업자·무역대리업자·외국환은행의 장"을 "당해 무역업자·외국환은행의 장"으로 한다.

제82조제1항중 "별표와 같다"를 "별표1과 같다"로 한다.

제96조제2항 본문중 "상공자원부차관"을 "통상산업부차관"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경제기획원·외무부·내무부·재무부·농림수산부·상공자원부·보건사회부·교통부·과학기술처·환경처"를 "재정경제원·외무부·내무부·농림수산부·통상산업부·정보통신부·환경부·보건복지부·노동부·건설교통부·과학기술처"로 하며, 동항제3호중

"상공자원부장관"을 "통상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104조제1항 본문중 "상공자원부장관"을 "통상산업부장관"으로 하고, 동항제5호 다목중 "원산지표시방법의 적정성 및 원산지 표시여부의 확인 등을 위하여 검사하는 권한"을 "원산지표시 및 표시방법의 적정성, 표시의 손상·변경여부의 확인을 위한 검사"로 하며, 동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법 제71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규정된 과태료에 대하여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와 동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접수 및 통보에 관한 사항

제104조제1항제6호중 "상공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33조"를 "통상산업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24조"로 하고, 동항제7호마목중 "원산지표시 여부를 확인하는 권한"을 "원산지표시 및 표시의 손상·변경여부의 확인"으로 하며, 동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법 제71조제2항제3호에 규정된 과태료에 대하여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와 동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접수 및 통보에 관한 사항

제104조제1항제12호가목중 "등록 및 변경등록을 위한 권한"을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로 하고, 동호다목중 "유효확인을 위한 권한"을 "신고사항의 확인"으로 하며, 동호라목을 삭제한다.

제104조제1항제13호가목중 "등록 및 변경등록을 하는 권한"을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로 하고, 동호다목중 "유효확인을 위한 권한"을 "신고사항의 확인"으로 하며, 동호라목을 삭제한다.

제104조제1항제14호를 삭제한다.

제10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법 제7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과태료를 부과·징수함에 있어서는 그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참작하되, 부과금액은 별표 2의 기준에 의한다.

제3조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6항, 제4조, 제5조제3호·제4호 및 제15호, 제5조의2, 제5조의3제3호, 제7조제2항, 제8조제2호 본문, 제9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2조제2항 내지 제4항, 제12조의2 본문, 제14조, 제1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7조제2항, 제24조의2제3호, 제25조제1항 본문·동항 단서·제2항 내지 제4항, 제26조, 제28조제1항 및 제2항, 제30조, 제33조제1호·제2호 본문 및 제3호, 제37조제2항제1호·제3항 단서·제5항 및 제6항, 제39조제1항 본문·제2항 본문 및 제3항, 제40조 본문, 제41조제1항 및 제2항, 제42조제1항 내지 제3항, 제44조제5호, 제45조제1항 본문·제2항 및 제3항, 제46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제2항 및 제3항, 제47조 본문 및 제3호, 제48조제1항·제2항제5호 및 제4항, 제48조의2, 제48조의3제1항, 제48조의4, 제48조의6제3호, 제48조의10, 제48조의11제1항 본문·동항제2호·제2항 내지 제4항, 제49조, 제52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제53조, 제59조 본문, 제60조 본문 및 제5호, 제63조의2제1항 내지 제4항, 제63조의3, 제63조의4제1항 내지 제3항, 제63조의6, 제81조제1항·제2항 및 제4항, 제82조제2항, 제83조제1항 및 제2항, 제84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제86조, 제87조제5호 및 제6호, 제88조 본문, 제89조 본문, 제90조제4호, 제91조제1항 본문·동항제3호 및 제2항 본문, 제92조제2항 본문, 제93조제3항, 제94조 본문 및 제3호, 제95조제4호, 제102조제1항 본문·제104조제1항제1호가목·라목 내지 바목 및 카목, 동항제3호 가목·나목 및 라목, 동항제4호, 동항제7호나목, 동항제8호 각호외의 부분 단서 및 가목 단서, 동항제9호, 동항제10호, 동항제11호가목 단서, 동항제16호, 동항제17호, 제104조제2항 및 제3항, 제105조제1항 내지 제3항중 "상공자원부장관"을 각각 "통상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48조의5, 제48조의8제1항 및 제99조제1항중 "상공자원부"를 각각 "통상산업부"로 한다.

제8조제2호 라목, 제40조 본문·제1호 및 제2호중 "재무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제52조제1항 본문·제2항 및 제104조제1항제8호 사목 본문중 "건설부장관"을 각각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

다.

104조제1항제1호 카목·제3호 라목 및 제5호 본문중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을 각각 "특별시장·광역시장"으로 한다.

[별표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무역대리업확인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4850호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는 무역대리업자는 이 영 시행일에 신고한 것으로 보아 제22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③(포괄수출승인) 이 영 시행전에 얻은 포괄수출승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2]

위반행위의 종별 및 과태료금액(제105조제4항관련)

| 위 반 내 용 | 관계법령 | 과 태 료 금 액 |
|---|---|---|
| 1. 수입후 국내에서 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할 물품을 원산지표시를 하지 아니한 상태로 유통시켰을 때 | 법 제71조 제2항제2호 | <공산품><br>당해물품의 판매 및 양도 장소에서 원산지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유통시킨 물량에 현지의 실거래 가격을 곱한금액<br><br><농수산물><br>농림수산부장관이 고시한 "원산지표시 농수산물 검사요령"에서 정한 과태료 금액 |
| 2. 검사공무원이 원산지표시 위반여부 등에 대한 검사를 할 때에 동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의 행위를 한 때 | 법 제71조제2항 제2호 및 제3호 | 100만원 |

비고 :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1천만원을 그 과태료 금액으로 한다.

## 대외무역법시행령

[시행 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50호, 1994. 12. 2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대통령령제14,450호(1994·12·23)
환경처와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32>생략
<33>대외무역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2항제1호중 "환경처"를 "환경부"로 한다.
<34>내지 <68>생략

## 대외무역법시행령

[시행 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47호, 1994. 12. 2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대통령령제14,447호(1994·12·23)
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61>생략
<62>대외무역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2항 중 "건설부장관"을 각각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63>내지 <145>생략
<146>대외무역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2항제1호중 "교통부"를 "건설교통부"로 한다.
<147>내지 <205>생략

## 대외무역법시행령

[시행 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46호, 1994. 12. 2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대통령령제14,446호(1994·12·23)
보건사회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64>생략
<65>대외무역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2항제1호중 "보건사회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66>내지 <140>생략

## 대외무역법시행령

[시행 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38호, 1994. 12. 2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대통령령제14,438호(1994·12·23)
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80>생략
<181>대외무역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라목, 제40조, 제62조제6항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제48조의7제2항제1호, 제96조제2항제1호중 "경제기획원"을 "재정경제원"으로하고, 제96조제2항제1호중 "재무부"를 삭제한다.
<182>내지 <327>생략

## 대외무역법시행령

[시행 1993. 7. 1] [대통령령 제13922호, 1993. 7.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대통령령제13,922호(1993·7·1)
대외무역법시행령중개정령

대외무역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중 "조사절차"를 "조사 및 협의절차"로 하고, 동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중 "법 제4조제2호 또는 제3호"를 각각 "법 제4조제2호·제3호 또는 제5호"로 하며, 동조제1항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을 "관계행정기관의 장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으로 하고,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상공자원부장관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수출·수입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특별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14호를 삭제한다.
13. "구매승인서"라 함은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이나 수입된 물품을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물품으로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의 장이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발급하는 증서를 말한다.

제5조 다음에 제1장의2 통상진흥정책(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장의2 통상진흥정책
제5조의2 (통상진흥시책의 수립) 상공자원부장관은 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진흥시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과 대한무역진흥공사등 무역 및 통상과 관련되는 기관의 협조를 얻을 수 있다.
제5조의3 (기타통상진흥시책의 내용) 법 제6조의2제2항제6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주요 지역별·경제권별 또는 업종별 통상진흥시책
2. 무역 및 통상의 진흥과 관련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의 통상활동계획
3. 기타 상공자원부장관이 무역 및 통상의 진흥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상진흥시책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 (갑류무역업의 등록기준등) ①갑류무역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수출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납입자본금 또는 출자총액이 1천만원이상인 법인
2. 최근 1월간의 1일 평균예금잔고가 1천만원이상인 개인
②상공자원부장관은 갑류무역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공자원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하게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록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8조의 제목중 "허가기준등"을 "등록기준등"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를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로 하며, 동조제1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제조업·광업·농업 및 임업을 영위하는 자
나 수산업법 제8조제1항 및 동법 제41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 (무역업등록의 절차) ①무역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상공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상공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상공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경우 제7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합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해당 무역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상공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업의 등록을 한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무역업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0조의 제목중 "허가의 면제"를 "등록의 면제"로 하고, 동조제2항에 제11호 내지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대외경제정책연구원법에 의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2. 중소기업의경영안정및구조조정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생산기술연구원 및 민간생산기술연구소
13. 산업디자인·포장진흥법에 의한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

제1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상공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이 제1항의 기준에 합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고한 자에게 무역업등록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 (무역업등록의 유효기간 및 등록갱신) ①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역업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을 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연도중에 무역업등록을 한 경우에 무역업등록의 유효기간은 그 등록을 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개시일부터 2년으로 한다.
②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업의 등록을 갱신하고자 하는 자는 무역업등록의 유효기간만료전 3월이내에 상공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상공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상공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경우 법 제1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되어 무역업등록의 갱신을 거절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당해 무역업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④상공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법 제1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되어 무역업등록의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 무역업등록의 유효기간만료일까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무역업등록의 갱신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 제1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되어 무역업등록의 갱신이 거절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역업등록의 유효기간만료일에 무역업등록이 갱신된 것으로 본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 (무역업자의 명단공고) 상공자원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무역업자의 명단을 공고하여야 한다.

1.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무역업자
2.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
3.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업의 등록을 갱신한 자

제13조 및 제1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 (수출·수입실적의 기준) 법 제11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역업등록의 유효기간이 만료하는 연도 또는 그 전년도의 수출·수입실적이 미화 5만달러상당액이상인 것(을류무역업의 등록을 한 자의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14조 (무역업등록의 취소 등의 통지) 상공자원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정지를 명할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 무역업자, 외국환은행의 장, 기타 필요한 기관의 장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정지를 명할 때에는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할 때에 이를 함께 공고함으로써 그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제15조제1항중 "법인세법 제22조제2항"을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로 한다.

제21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상공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경우 제19조 또는 제20조의 규정에 합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해당 무역대리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상공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대리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무역대리업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22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 (무역대리업자의 명단공고) 상공자원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무역대리업자의 명단을 공고하여야 한다.

1.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무역대리업자
2.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대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
3.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대리업에 대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자

제23조제1항 본문중 "3만달러"를 "1만달러"로 한다.

제24조 단서중 "제22조제2항"을 "제22조의2"로 한다.

제3장제1절에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 (수출입공고물품) 법 제1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방위산업용 원료·기재
2. 항공기 및 동 부분품
3. 제1호 및 제2호외에 주요원자재의 안정적 확보, 물자수급의 원활, 국내물가의 안정, 과학기술의 발전 또는 통상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상공자원부장관이 당해 품목을 관장하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물품

제2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법 제19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은 국가별로 수출·수입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상공자원부장관이 당해 품목을 관장하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물품을 말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수출·수입에 대하여는 법 제19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공고에 불구하고 상공자원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공고하는 바에 따라 수출·수입의 승인을 할 수 있다.

제25조의2 및 제2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 (포괄수출승인) ①상공자원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물품을 계속적으로 수출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한 수출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개별적인 물품의 수출승인에 갈음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포괄적 승인(이하 "포괄수출승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물품의 수출로서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공고,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공고 및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 의하여 수출이 제한 또는 금지되지 아니하는 물품의 수출
2. 대금결제방법이 상공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신용장방식으로 되어 있는 수출

②포괄수출승인을 얻은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중에 제1항 각호의 요건에 적합한 수출을 하는 경우 당해 물품의 수출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신고(이하 "수출신고"라 한다)를 한 날에 법 제1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수출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③포괄수출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상공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상공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상공자원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괄수출승인을 한 경우에는 당해 승인을 한 날부터 7일이내에 그 사실을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의3 (소액수출승인) 상공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일정규모이하의 물품을 수출하는 자로서 제25조의2제1항 각호의 요건에 적합한 수출을 하는 자는 법 제1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신고를 한 날에 법 제1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수출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27조·제29조·제31조·제32조·제34조 및 제35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수출입공고등에서"를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공고,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공고 및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 의하여"로 한다.

①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수입승인의 유효기간(이하 "유효기간"이라 한다)은 수출·수입을 승인한 날 또는 제25조의2제2항 및 제2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는 날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상공자원부장관은 물품인도조건, 대금결제기간 기타 거래상의 특성 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0년의 범위안에서 따로 기간을 정할 수 있다.

제37조제2항제2호중 "제38조제2항"을 "제38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제37조제3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유효기간내에 당해 물품의 수출·수입과 수출대금의 회수 또는 수입대금의 지급중 어느 하나 또는 그 모두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에 그 수출·수입승인은 효력을 잃는다. 다만, 상공자원부장관은 유효기간내에 유효기간연장승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유효기간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규로 당해 물품에 대한 수출·수입의 제한조치가 있는 때에는 이에 적합하여야 한다.

⑥상공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유효기간내에 유효기간연장승인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도 은행간의 대금결제과정에서 대금결제가 지연되는 경우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그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2 (수출입이행사항의 확인) 상공자원부장관은 법 제2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수출하는 물품이 제2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괄수출승인된 내용과 일치하는 물품인지의 여부
2. 수출하는 물품이 제2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는 물품인지의 여부
3. 수출·수입하는 물품이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수입승인이 면제되는 물품인지의 여부

제38조·제40조 및 제4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 (수출입승인의 사후관리) ①상공자원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수입의 승인을 얻은 자가 그 유효기간내에 물품의 수출·수입과 당해 물품의 수출대금의 회수 또는 수입대금의 지급을 승인된 내용에 따라 이행하였는지의 여부 등에 관하여 법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확인(이하 "사후관리"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수출·수입의 승인을 얻은 자의 파산 또는 행방불명등으로 수출·수입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수출대금의 미결제금액 또는 수입대금의 미지급금액이 미화 5천달러상당이하인 경우
3. 수출선수금을 수취한 후 행방불명등으로 거래상대방이 없는 경우

②상공자원부장관은 제25조의2제2항 및 제2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어 물품을 수출한 자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물품의 수출대금 회수의무를 이행하였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0조 (대금결제방법에 관한 협의) 상공자원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수출·수입의 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제1호의 경우에는 포괄적으로, 제2호의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대금결제방법에 관하여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일정한 금액·수량 또는 결제기간 등에 의하여 외국환관리법 제17조 및 동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결제방법에 의한 수출·수입
2. 외국환관리법 제17조 및 동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결제방법에 의한 개별적인 수출·수입

제41조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수입승인) ①상공자원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수입에 대하여는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공고 또는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 의하여 그 수입이 제한되는 품목이라도 상공자원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입을 승인할 수 있다.

②상공자원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산의 원료·기재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외화획득용 원료의 수입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제한하고자 하는 품목 및 그 수입에 필요한 절차를 따로 정하여야 한다.

제43조제1항제1호중 "구매승인서 또는  수입원자재구매승인서"를 "구매승인서"로 한다.

제4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4호를 삭제한다.

1.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공고 또는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 의하여 수입이 제한되는 품목
2. 산업피해조사결과에 의한 구제조치에 따라 수입이 제한되는 품목

제47조제3호중 "정하는 경우"를 "인정하는 경우"로 한다.

제3장의 "제2절 산업설비수출"을 "제3절 산업설비수출"로 하고, 동장에 제2절 전략물자의 수출입(제48조의2 내지 제48조의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절 전략물자의 수출입

제48조의2 (전략물자의 수출허가) 법 제2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략물자(이하 "전략물자"라 한다)를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상공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전략물자를 관장하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8조의3 (전략물자수입증명서의 발급등) ①법 제2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증명서는 전략물자를 수입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공자원부장관이 이를 발급한다.

②제48조의2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당해 전략물자를 국내로 수입하지 아니하고 외국으로 환적·전송 또는 재수출(유상 ·무상을 불문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48조의4 (전략물자수출입공고) 상공자원부장관이 법 제24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략물자의 수출·수

입의 제한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이하 "전략물자수출입공고"라 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8조의5 (전략물자수출입통제위원회의 설치) 전략물자의 수출·수입의 제한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상공자원부에 전략물자수출입통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8조의6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8조의4의 규정에 의한 전략물자수출입공고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전략물자의 수출·수입에 관한 주요 정책
3. 기타 전략물자의 수출·수입의 제한에 관하여 상공자원부장관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48조의7 (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상공자원부소속의 1급공무원중 상공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경제기획원·외무부·국방부·상공자원부·체신부·과학기술처·관세청 및 경찰청소속의 2급 또는 3급 공무원중에서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전략물자와 관련이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 각 1인
2. 기타 전략물자의 수출·수입의 제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상공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③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8조의8 (간사) ①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상공자원부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한다.

제48조의9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 그가 관장하는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참석하는 때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8조의10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공자원부장관이 정한다.

제48조의11 (전략물자거래부적격자) ①상공자원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전략물자거래부적격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법 제2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년이내의 기간동안 전략물자의 수출 또는 수입을 금지할 수 있다.

1. 법 제24조의3의 규정 및 이 영에 위반한 자
2. 전략물자의 수출 또는 수입에 관한 국제무역질서를 위반한 자로서 상공자원부장관이 전략물자의 수출 또는 수입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상공자원부장관은 무역업자등이 전략물자를 외국정부가 자국의 법에 의하여 전략물자의 수출 또는 수입을 제한하는 자(이하 "외국의 전략물자거래부적격자"라 한다)에게 수출하거나 외국의 전략물자거래부적격자로부터 수입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③상공자원부장관은 전략물자거래부적격자와 외국의 전략물자거래부적격자의 명단을 공고할 수 있으며, 이를 공고할 때에는 외국정부에 통보할 수 있다.

④전략물자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세청장등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음을 안 경우에 전략물자의 불법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즉시 당해 무역업자 등을 전략물자거래부적격자로 지정하여 줄 것을 상공자원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51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제3호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한하여 상공자원부장관은 산업설비수출업자 또는 수출용기자재를 설계·제작하는 자가 제작한 기계 및 장치를 직접 설치하는 공사를 산업설비설치공사로 인정할 수 있다.

1. 조세감면규제법 제2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해외사업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2. 해외건설촉진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공사실적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제5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외 취업자의 모집의 경우

가.모집계획·모집직종과 모집인원 및 방법(급여수준·취업기간등)
나. 근로조건
다. 재해보험가입증명서 또는 가입예정서

제55조를 삭제한다.

제3장제3절의 제63조 다음에 제4절 원산지표시등(제63조의2 내지 제63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절 원산지표시등

제63조의2 (수출·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등) ①법 제3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공자원부장관이 원산지표시대상물품으로 지정한 물품에 대하여는 당해물품에 그 물품의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은 상공자원부장관이 당해 물품을 관장하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한다.
③상공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표시의 요건·단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상공자원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수입통관된 물품의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관장하는 품목에 대하여 상공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당해 물품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⑤원산지표시대상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법 제3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물품이 통관되는 때에 원산지표시여부에 대하여 상공자원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⑥상공자원부장관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통관되어 국내유통중인 물품의 원산지표시방법의 적정성 및 원산지표시여부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무역업자·무역대리업자 또는 판매업자의 사무소·영업소·공장 또는 창고등에서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63조의3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교역상대국의 관세양허를 받기 위하여 수출하는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상공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산지증명서의 발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3조의4 (수입물품의 원산지증명서의 제출 및 확인) ①상공자원부장관은 법 제3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지역으로부터 특정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특정물품의 선적국 또는 원산지국의 세관·관공서 또는 상공회의소등에서 발행하는 원산지증명서를 그 물품의 수입신고를 할 때에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②상공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물품 및 특정지역을 정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기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의 확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상공자원부장관이 정한다.

제63조의5 (원산지판정의 기준등) 수입물품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본다.
1. 당해 물품의 전부를 생산한 국가
2. 당해 물품이 2국이상에 걸쳐 생산·가공·제조된 경우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하고 당해 물품으로서의 새로운 특성을 부여한 행위를 최종적으로 행한 국가

제63조의6 (원산지의 판정) 제63조의2제5항 및 제63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의 확인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무역업자·무역대리업자 또는 판매업자등은 상공자원부장관에게 원산지의 판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64조 본문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1호 및 제2호중 "30퍼센트이상"을 각각 "100분의 20이상"으로 하며, 동조제1호중 "10인 이상"을 "5인 이상"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상당량을 수입하는 생산자를 제외할 수 있다.

제65조제1항 본문중 "신청서"를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로 하고, 동조제1항제4호중 "실질적으로 피해를"을 "심각한 피해를"로 하며,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66조제1항제2호 및 제67조제4항제2호중 "실질적인 피해"를 각각 "심각한 피해"로 한다.

제67조의2제6항을 삭제한다.

제67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7조의4 (영업상비밀자료의 취급) ①신청인 또는 산업피해조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는 신청서 및 이와 관련하여 제출하는 자료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영업상비밀자료로 취급하여 줄 것을 무역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비밀이 아닌 요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조원가에 관한 자료
2. 개별거래선의 판매가격 및 거래량에 관한 자료
3. 생산공정 및 생산설비 또는 내부회계에 관한 자료
4. 비밀정보제공자에 관한 자료
5. 기타 경쟁자에게 공개됨으로써 기업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자료

②무역위원회는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때에는 영업상비밀자료로 취급하여야 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내용을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영업상비밀자료는 제출한 자의 명시적인 동의없이 산업피해조사외의 목적으로 이를 공개하거나 열람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영업상비밀자료의 신청 및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무역위원회가 정한다.

제69조의 제목, 동조 본문, 동조제2호 및 제3호중 "결정"을 각각 "판정"으로 하고, 동조제2호 및 제3호중 "실질적인 피해"를 각각 "심각한 피해"로 하며, 동조제5호중 "급증으로"를 "증가로" 하고, "실질적인"을 삭제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무역위원회는 제1항의 국내산업이 농림수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에 관하여 농림수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세부검토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72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7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3조 (잠정조치의 건의등) ①무역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신청인의 신청에 의하여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잠정조치의 건의를 할 수 있다.
②무역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조치의 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이 있는 날부터 30일이내에 잠정조치의 건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내용이 복잡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위원회가 잠정조치를 건의한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조사의 대상이 되는 산업이 농림수산업인 경우에는 그 건의를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잠정조치의 시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잠정조치의 시행을 위하여 관계행정기관·관련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의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기간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조치의 기간은 조치일로부터 200일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조치는 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피해가 없다고 판정되거나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결정한 구제조치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제7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례검토는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구제조치를 한 후 1년이 경과할 때마다 그 구제조치일에 해당하는 날부터 120일이내에 행한다. 다만, 구제조치의 잔여기간이 연례검토의 시점에서 1년이하인 경우에는 당해 구제조치종료일전 45일까지 이를 할 수 있다.

제76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6호 내지 제8호를 각각 제8호 내지 제10호로 하며, 동조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 하고, 동조에 제4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9호(종전의 제7호)중 "세부운영규정의 제정"을 "운영규정의 제정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3. 법 제40조중 결정·판정 및 건의에 관한 사항
4. 제67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상비밀자료의 취급여부결정에 관한 사항
7.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조치의 건의여부결정기간의 연장에 관한 사항

제78조의 제목 "(세부운영규정)"을 "(운영규정)"으로 하고, 동조중 "결정"을 "결정·판정"으로 한다.

제7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9조의2 (불공정수출입행위의 통보 및 조사) ①세관장은 수출입물품이 통관되는 경우에 당해 물품이 법 제4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수출입행위에 의하여 수출입되는 물품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불공정수출입행위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무역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무역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불공정수출입행위가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에 관하여는 제79조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2조제2항중 "1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한다.

제83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상공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분쟁의 통지를 받은 경우 그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견조정 또는 알선을 할 수 있다.

제8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7조 (조정명령의 사유) 법 제4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를 말한다.

1. 정부간 무역에 관한 협정의 체결 또는 그 체결된 협정의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4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만으로는 물품의 수출·수입의 질서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산업설비수출을 수주하고자 하는 경우
4. 외국에서 행하는 국제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5.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위산업물자의 수출과 상공자원부장관이 따로 범위를 정한 일반군수물자의 수출의 경우
6. 기타 물품의 수출·수입의 질서를 교란하거나 대외신용을 손상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공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8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95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동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통상진흥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제9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제2항제22호"를 "제2항제3호"로 한다.

②위원장은 상공자원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경제기획원·외무부·내무부·재무부·농림수산부·상공자원부·보건사회부·교통부·체신부·과학기술처·환경처·관세청·산림청·수산청 및 공업진흥청소속의 1급공무원중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인
2. 대한무역진흥공사·산업연구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한국은행·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한국

기계공업진흥회 및 한국전자공업진흥회소속의 임원중에서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무역 및 통상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 각 1인
3. 기타 무역 및 통상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상공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제103조·제104조 및 제10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3조 (수수료) 제63조의3의 규정에 의한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500원의 수수료를, 재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3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04조 (권한의 위임·위탁) ①상공자원부장관은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그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한다.
1. 다음의 권한은 해당품목을 관장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
가. 상공자원부장관이 관장하는 품목외의 품목에 대하여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용 원료의 수입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 그 수입품목과 수입절차를 정하는 권한
나. 가목에서 정한 품목에 대하여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용 원료의 품목 및 수량의 결정기준과 그 범위를 정하는 권한
다. 가목에서 정한 품목에 대하여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의 이행기간을 결정하는 권한 및 외화획득의 이행기간을 연장하는 권한
라. 가목에서 정한 품목 및 외화획득용 제품중 상공자원부장관이 정하는 품목에 대하여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를 하는 권한
마. 가목에서 정한 품목 및 외화획득용 제품중 상공자원부장관이 정하는 품목에 대하여 법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목적변경승인을 하는 권한
바. 가목에서 정한 품목 및 외화획득용 제품중 상공자원부장관이 정하는 품목에 대하여 법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양수의 승인을 하는 권한
사.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협약체결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하는 권한
아.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명령을 하는 권한
자. 제9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을 인가하는 권한
차.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게 하는 권한
카. 제5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한 외화획득이행기간연장 및 사용목적변경승인업무중 상공자원부장관이 관장하는 품목외의 품목에 대한 업무에 대하여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지휘·감독을 하는 권한
타. 법 제2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전략물자수입증명서를 발급하는 권한
2. 제87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조정명령을 하는 권한중 방위산업물자(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주요 방산물자에 한한다)의 수출에 대하여 조정명령을 하는 권한은 국방부장관에게 위탁한다.
3. 다음의 권한은 공업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
가. 상공자원부장관이 관장하는 품목(목재가구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용 원료의 품목 및 수량의 결정기준과 그 범위를 정하는 권한
나. 상공자원부장관이 관장하는 품목에 대하여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를 하는 권한
다. 제8호마목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위탁한 외화획득용 원료의 회화획득이행상황의 관리에 대하여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지휘·감독을 하는 권한
라. 제5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한 외화획득이행기간연장 및 사용목적변경승인업무중 상공자원부장관이 관장하는 품목에 대한 업무에 대하여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지휘·감독을 하는 권한
4. 상공자원부장관이 관장하는 품목중 목재가구에 대하여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용 원료의 품목 및 수량의 결정기준과 그 범위를 정하는 권한은 임업연구원장에게 위탁한다.
5. 다음의 권한(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자유지역관리소장에게 위임된 권한을 제외한다)은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가. 제1호가목에서 정한 품목외의 품목에 대하여 제4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이행기간을 연장하는 권한
나. 제1호가목에서 정한 품목외의 품목에 대하여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목적변경승인을 하

는 권한
다. 제63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통관되어 국내유통중인 물품의 원산지표시방법의 적정성 및 원산지표시여부의 확인 등을 위하여 검사하는 권한
6. 제5호 및 각목의 권한중 상공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자유지역관리소의 관할구역내의 입주업체에 대한 권한은 수출자유지역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7. 다음의 권한은 세관장에게 위탁한다.
가.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수입승인의 유효기간연장승인에 관한 권한중 1월이내의 범위안에서 연장하는 권한
나. 상공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법 제19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수출·수입승인사항의 변경승인을 하는 권한
다. 법 제24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수출·수입이행사항을 확인하는 권한
라. 법 제3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의 확인을 위하여 수출·수입하는 물품을 검사하는 권한
마. 제63조2제5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표시여부를 확인하는 권한
8. 다음의 권한은 외국환은행(외국환관리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환은행 및 한국수출입은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위탁한다. 다만, 상공자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국환은행의 장을 지정하여 위탁하거나 위탁한 업무를 처리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외국환은행의 장에 대하여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수입의 승인 및 변경승인을 하는 권한. 다만, 상공자원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의 연장승인 및 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직권유효기간연장을 하는 권한
다.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수입승인의 사후관리를 하는 권한
라.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미회수대금처리·미지급대금처리 및 초과영수금액처리의 승인을 하는 권한
마. 제1호가목에서 정한 품목외의 품목에 대하여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이행상황의 관리를 하는 권한
바. 제1호가목에서 정한 품목외의 품목에 대하여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양수의 승인을 하는 권한
사.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설비수출의 승인 및 변경승인을 하는 권한(일괄수주방식에 의한 수출로서 건설부장관과 노동부장관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한다). 다만, 연불금융지원거래인 경우에는 한국수출입은행장에 한한다.
아.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기자재의 반출확인을 하는 권한
자.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기자재의 수입승인을 하는 권한
차. 법 제71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징수를 하는 권한
카. 법 제24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대금의 회수 또는 수입대금의 지급의 이행사항확인을 하는 권한
9.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위탁한 수출·수입승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지휘·감독을 하는 권한중 상공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권한은 본점인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위탁한다.
10.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위탁한 수출·수입승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지휘·감독을 하는 권한중 상공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권한은 한국은행총재에게 위탁한다.
11. 다음의 권한은 한국무역협회장에게 위탁한다.
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을 하는 권한. 다만, 상공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의 외국인에 대하여 등록 및 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상공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나.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무역업자지위승계의 신고를 수리하는 권한
다.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역업등록갱신을 하는 권한
라. 법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무역업의 등록취소 및 정지를 하는 권한
마.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무역업자의 명단을 공고하는 권한

12. 다음의 권한은 한국무역대리점협회장에게 위탁한다.
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갑류무역대리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을 하는 권한
나.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갑류무역대리업자지위승계의 신고를 수리하는 권한
다.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갑류무역대리업의 유효확인을 하는 권한
라. 법 제17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갑류무역대리업의 등록취소 및 정지를 하는 권한
마.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갑류무역대리업자의 명단을 공고하는 권한
13. 다음의 권한은 한국수출구매업협회장에게 위탁한다.
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을류무역대리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을 하는 권한
나.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을류무역대리업자지위승계의 신고를 수리하는 권한
다.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을류무역대리업의 유효확인을 하는 권한
라. 법 제17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을류무역대리업의 등록취소 및 정지를 하는 권한
마.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을류무역대리업자의 명단을 공고하는 권한
14. 상공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산업설비수출에 대하여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수주계획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를 하는 권한은 산업설비수출협회장에게 위탁한다.
15. 다음의 권한은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장에게 위탁한다.
가.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디자인보호대상물품의 지정신청을 수리하는 권한
나.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물품의 지정 및 공고를 하는 권한
다.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물품의 지정취소 및 공고를 하는 권한
16.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위탁한 사항에 대하여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지휘·감독을 하는 권한중 상공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권한은 관세청장에게 위탁한다.
17. 상공자원부장관이 물품 및 대금결제방법 등에 관하여 일정한 범위를 정하는 수출·수입에 대하여 법 제1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수출·수입의 승인 및 변경승인을 하는 권한은 추천기관(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공고에 공고한 물품의 수출·수입에 관한 추천 또는 확인 등에 관한 업무를 행하는 기관을 말한다)의 장에게 위탁한다.
18.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분쟁에 대한 의견조정 또는 알선을 하는 권한은 대한상사중재원장에게 위탁한다.
②상공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가 법 또는 이 영에 위반하여 그 위임 또는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한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자는 지체없이 그 업무를 시정하고 그 결과를 상공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6조 (공무원 의제) 법 제72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라 함은 한국무역협회·한국무역대리점협회·한국수출구매업협회·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 및 대한상사중재원을 말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과징금부과기준(제82조 관련)

(단위 : 천원)

| 위반행위 | 해당조항 | 과징금금액 |
|---|---|---|
| 1. 제4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법령 또는 교역 상대국의 법령에 의하여 보호되는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저작권·저작인접권 및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수출·수입하는 행위를 한 때 | 법 제44조제4항 | 30,000 |
| 2. 법 제4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물품을 수출·수입 | 법 제44조제4항 | 20,000 |

| | | |
|---|---|---|
| 하는 행위를 한 때 | | |
| 3. 기타 상공자원부장관이 수출입 질서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불공정한 수출·수입행위로 지정한 행위를 한 때 | 법 제44조제4항 | 10,000 |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무역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상공자원부장관은 법률 제4527호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무역업자에 대하여는 상공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무역업의 등록을 하고, 무역업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 (수입원자재구매승인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대외무역법시행령에 의하여 발급한 수입원자재구매승인서는 제5조제13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구매승인서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외자도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중 "상공부차관·동력자원부차관"을 "상공자원부차관"으로 한다.

②중소기업진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2중 "상공부장관"을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하고, 제22조제4항, 제29조의2제5항 및 제56조중 "상공부령"을 "상공자원부령"으로 한다.

③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제14조, 제16조제1항, 제22조제1항제15호, 제25조제2항, 제27조의2, 제33조제1항 내지 제3항, [별표1] 및 [별표2]중 "상공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④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중 "동력자원부령"을 "상공자원부령"으로 하고, 제22조제2항제1호 및 [별표1] 내지 [별표3]중 "동력자원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동력자원부령"을 각각 "상공자원부령"으로 한다.

⑤산업디자인·포장진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중 "상공부"를 "상공자원부"로 하고, 동조동항 단서 및 제11조제2항중 "상공부소속"을 "상공자원부소속"으로 하며, 제11조제2항중 "상공부장관"을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하고, 제35조제3항중 "상공부차관"을 "상공자원부차관"으로 한다.

⑥기초과학연구진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1항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하고, 제5조제2항제2호,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중 "문교부"를 각각 "교육부"로 한다.

제5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동항제5호를 삭제한다.

4. 상공자원부

가. 산업 및 공업의 진흥에 필요한 기초과학연구의 진흥

나. 기업의 대학기초과학연구활동 지원과 산·학협동촉진제도의 발전등

다. 에너지 및 자원의 효율적 개발·이용에 필요한 기초과학연구의 진흥

라. 에너지 및 자원관련 국·공립연구기관, 정부투자기관 기타 단체 등의 기초과학연구활동 장려 및 지원등

⑦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5조제1항중 "13인의"를 "12인의"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중 "동력자원부장관"을 삭제한다.

⑧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2제2항 및 [별표1]중 "상공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⑨수출자유지역설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 및 제2항중 "상공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⑩염업조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중 "상공부령"을 "상공자원부령"으로 하고, 제12조제1항중 "상공부장관"을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⑪수출보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본문중 "상공부차관"을 "상공자원부차관"으로 하고, 동조동항제4호중 "상공부장관"을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⑫중소기업협동조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2항중 "상공부장관"을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⑬공업발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중 "상공부장관"을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⑭중소기업의경영안정및구조조정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2호중 "상공부장관"을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⑮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중 "상공부장관"을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16>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제26조제8호 및 제36조제1항 단서중 "상공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하고, [별표 6]중 "상공부령"을 "상공자원부령"으로 한다.
<17>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중 "상공부장관"을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18>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중 "상공부령"을 "상공자원부령"으로 한다.
<19>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및 [별표2]중 "상공부령"을 각각 "상공자원부령"으로 한다.
<20>소계곡수력발전소시설사업비보조금교부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중 "동력자원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21>전원개발지점조사비보조금교부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중 "동력자원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22>해저광물자원개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중 "동력자원부장관"을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23>광산보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중 "상공자원부장관이 공업진흥청장과 협의하여"를 삭제하고, 제41조제2항 본문중 "동력자원부차관"을 "상공자원부차관"으로 하며, 제44조제2항중 "동력자원부소속"을 "상공자원부소속"으로 한다.
<24>광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제53조제2항, 제72조, 제80조제2항 및 제86조제2항중 "동력자원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하고, 제86조제2항중 "동력자원부"를 "상공자원부"로 하며, 제36조중 "동력자원부령"을 "상공자원부령"으로 한다.
<25>석유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중 "경제기획원장관, 재무부장관 및 상공부장관과"를 "경제기획원장관 및 재무부장관과"로 한다.
[별표 2]제6호중 "동력자원부장관"을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26>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중 "동력자원부령"을 "상공자원부령"으로 한다.
[별표 1] 내지 [별표3]중 "동력자원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동력자원부령"을 각각 "상공자원부령"으로 한다.
<27>대한광업진흥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중 "동력자원부장관"을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28>대한석탄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및 제3항중 "동력자원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29>석탄산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별표 1] 및 [별표 2] 중 "동력자원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동력자원부령"을 각각 "상공자원부령"으로 한다.

<30>전기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동력자원부"를 "상공자원부"로 한다.
제27조제2항중 "상공자원부장관에게 위탁한다."를 "수출자유지역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로 한다.
[별표 1]중 "동력자원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동력자원부령"을 각각 "상공자원부령"으로 한다.

## 대외무역법시행령

[시행 1993. 3. 6] [대통령령 제13870호, 1993. 3. 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대통령령제13,870호(1993·3·6)
상공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내지 <113>생략
<114>대외무역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제1항 내지 제4항, 제4조, 제5조제3호·제4호·제15호, 제7조제2항, 제8조제2호, 제9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0조제3항, 제11조제2항·제3항, 제12조제1항·제2항, 제14조, 제15조, 제16조제2항, 제17조제2항, 제21조, 제22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제1항·제2항, 제30조 내지 제32조, 제33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제2항·제3항·제5항·제6항, 제38조제1항, 제39조,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4조제5호, 제45조, 제46조, 제47조, 제48조, 제49조, 제52조 내지 제54조, 제57조, 제58조, 제59조, 제60조, 제61조제2항, 제62조제1항·제5항 내지 제7항, 제63조, 제67조의2제6항, 제72조제3항, 제73조, 제74조제1항, 제80조제2항, 제81조제1항·제2항·제4항, 제82조제2항, 제83조, 제84조제1항·제2항, 제86조, 제87조, 제88조 내지 제90조, 제91조제1항·제2항, 제92조제2항, 제93조제3항, 제94조, 제95조제3호, 제96조제2항, 제102조제1항, 제104조제1항, 동조동항제1호·제3호·제4호·제7호·제8호·제10호·제11호·제15호, 동조제2항·제3항 및 제105조제1항 내지 제3항중 "상공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하고, 제96조제2항제6호를 "상공자원부차관"으로 하며, 제7호를 삭제하고, 제99조제1항중 "상공부"를 "상공자원부"로 한다.
<115>내지 <188>생략

## 대외무역법시행령

[시행 1990. 3. 8] [대통령령 제12949호, 1990. 3.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대통령령제12,949호(1990·3·8)
대외무역법시행령중개정령

대외무역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갑류무역대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외국의 수출업자의 위임을 받은 자이거나 외국의 수출업자의 국내지사 또는 대리점이어야 한다.

제2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1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무역대리업의 실적중 갑류무역대리업의 실적은 최근 2년중 어느 연간

물품매도확약서발행수수료 및 수출알선수수료의 입금실적이 미화 3만달러 상당액이상으로 한다. 다만, 물품매도확약서발행수수료가 발생되지 아니하는 거래를 전업으로 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장 (제64조 내지 제78조)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제4장 수입에 의한 산업피해조사

### 제1절 신청 및 조사

제64조 (이해관계인 등) 법 제32조1항에서 "당해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다만, 당해 수입물품의 수출자·수입자 또는 당해 무역 및 유통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공급자와 계열관계등 특수관계가 있는 생산자·서비스의 공급자 및 당해 물품의 수입자인 생산자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당해 국내산업에서 차지하는 생산량 또는 업체수의 비중이 30퍼센트이상인 생산자. 다만, 농림수산업의 경우에는 10인이상의 당해 물품의 생산자를 말한다.
2. 당해 국내산업에서 차지하는 서비스의 공급액 또는 업체수의 비중이 30퍼센트이상인 서비스의 공급자
3. 법 제32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국내 관계 법령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자
4. 당해 국내산업의 생산자 또는 서비스의 공급자로 구성된 협회·조합 또는 산업별 노동조합

제65조 (산업피해조사의 신청) ①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한 물품의 수입등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피해를 조사(이하 "산업피해조사"라 한다)하여 줄 것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무역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특성·용도 및 생산자명 또는 당해 서비스의 내용·종류·특성·용도 및 공급자명
2. 당해 물품의 수출자·수입자·수입실적(물량 및 금액) 및 일정기간 동안의 예상수입량 또는 당해 서비스의 공급자·공급받는자·공급실적 및 일정기간 동안의 예상공급액
3. 국내의 동종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의 품명·규격·특성·용도 및 생산자명 또는 서비스의 내용·종류·특성·용도 및 공급자명. 다만, 법 제32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당해 침해받는 권리등과 그 내용을 기재한다.
4. 특정한 물품의 수입등으로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것으로 우려되는 사항
5. 당해 국내산업이 산업지원 관계법령에서 지원받고 있는 내용 및 정도
6. 당해 국내산업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요청하는 조치의 내용·정도 및 기간
7. 첨부한 자료를 비밀로 취급할 것을 조건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②무역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중 신청인이 비밀로 취급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제출하는 서류(이하 "영업상 비밀자료"라 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서류를 제출한 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는 이를 공개하거나 열람에 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당해 영업상 비밀자료가 아닌 요약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6조 (산업피해조사의 개시결정) ①무역위원회는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피해조사의 개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의 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을 할 수 있다.

1. 신청서 및 증빙자료가 미비하여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하였으나 신청인이 이에 불응하는 경우
2. 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심사한 결과 특정한 물품의 수입등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실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경우

②무역위원회는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피해조사의 개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고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67조 (산업피해의 조사단 구성등) ①무역위원회는 산업피해조사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1. 무역위원회 소속 공무원
2. 당해 산업을 관장하는 관계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3. 당해 산업과 관련있는 정부출연 연구기관 또는 단체의 임원 및 직원
4. 변호사·변리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

5. 기타 산업·무역 및 국제경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무역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단을 구성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정부 출연 연구기관 또는 단체의 장등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무역위원회는 조사단의 구성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이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조사단의 구성원이 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를 행한다.

1. 수입수량 또는 서비스공급의 증가추이 및 그 요인
2. 특정한 물품의 수입등이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주거나 피해를 줄 것으로 우려되는 사항과 그 정도
3. 법 제32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당해 권리등의 침해사실 여부 및 그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 규모
4. 당해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현황과 전망, 국내업계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자구 노력의 정도
5. 당해 국내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피해구제수단과 당해 조치가 수출·관련산업·소비자의 이익 및 통상관계등에 미치는 영향
6. 기타 무역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7조의2 (산업피해조사의 실시) ①무역위원회는 산업피해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관련기관 또는 단체의 장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무역위원회는 산업피해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단을 교역상대국에 파견하여 국내로의 수출증대 가능성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이해관계인은 의견의 진술이나 상반된 이해관계인과의 협의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무역위원회에 공청회를 개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무역위원회의 요청에 의하여 공청회에 참석하는 증인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이해관계인은 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기간중에는 언제든지 무역위원회에 국내산업에 미치는 피해의 유무 및 구제방안에 관하여 자기의 의견을 진술하거나 이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⑤무역위원회는 이해관계인이 신청인 또는 다른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열람을 요청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해관계인의 자료열람 요청은 그 사유 및 자료목록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⑥무역위원회는 산업피해조사중에 외국에서 정상가격 이하로 판매되거나 보조금을 지급받은 물품이 수입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덤핑방지 또는 상계관세의 부과를 위한 조사절차를 개시하도록 재무부장관에게 요청할 것을 상공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67조의3 (조사관련자료의 목적외의 사용금지) 무역위원회 및 조사단의 구성원은 당해 산업피해조사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자료나 인지한 사실을 산업피해조사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68조 (산업피해조사의 종결등) ①무역위원회는 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기간중에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조사를 종결할 수 있다.

1. 신청인이 산업피해조사의 신청을 철회한 때
2. 법 제32조제1항제3호의 경우 신청인과 이해관계인간에 화해계약을 체결한 때
3. 신청인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의를 수락한 때

②당해 산업피해조사의 상대방인 외국의 주요 생산자·수출자·서비스의 공급자 또는 그들로 구성된 협회나 조합이 수출의 감소제의를 한 때에는 무역위원회는 당해 제의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 협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무역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종결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고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69조 (산업피해 유무의 결정시 검토사항) 무역위원회는 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산업에 미치는 피해의 유무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수입수량 또는 외국인에 의한 서비스의 공급이 증가하고 있는지 여부
2. 실질적인 피해유무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목의 사항

가. 공장폐쇄를 포함한 국내산업의 생산설비의 상당한 유휴 여부

나. 상당수 업체가 합리적인 이윤수준에서 국내생산활동을 수행할 수 없는 상태인지 여부
다. 국내산업의 상당한 실업 또는 불완전 고용 여부
3. 실질적인 피해의 우려유무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목의 사항
가. 국내산업에 있어서 판매·시장점유율 및 가동율의 감소 또는 재고의 증가 여부
나. 국내산업의 생산·이윤·고용의 감소 또는 임금의 인하 추세 여부
4. 법 제32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판매감소, 손실의 발생 또는 그 우려여부
5. 특정한 물품의 수입수량의 급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실질적인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거나 그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
6. 당해 국내산업의 특성과 산업정책 및 관련산업과의 관계, 국내물가 및 소비자 이익등 국민경제에 대한 영향, 통상관계, 기타 사회·문화적 요인

제70조 (재조사신청등) ①법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경우 신청인은 재조사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무역위원회에 재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무역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아 재조사를 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제66조 내지 제6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재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무역위원회는 산업피해의 유무를 결정한 날부터 1년이내에는 재조사의 결정을 할 수 없다.

제2절 구제조치의 건의 및 조치

제71조 (구제조치의 건의) 무역위원회는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제조치를 건의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국내산업을 관장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당해 국내산업과 관련있는 협회·조합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제72조 (구제조치의 내용등) ①법 제3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 및 생산성 향상등을 위한 산업지원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지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당해 국내산업의 보호·육성 또는 업종전환등을 위하여 정부가 출연하고 있는 각종 기금에서의 지원 또는 세제상의 지원
2. 당해 국내산업의 근로자에 대한 재교육 또는 전직훈련
3. 기타 정부가 출연하는 연구기관에 의한 기술개발의 지원등
②법 제34조제1항제6호에서 "기타 국내산업의 구제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치"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협약체결의 권고
2. 특정한 물품의 국내실수요자 또는 국내실수요자로 구성된 협회·조합등과 국내생산자 또는 국내생산자로 구성된 협회·조합등간의 일정수준의 국산품을 구매하는 협약체결의 권고
3. 교역상대국정부와 특정물품의 수입등을 제한하는등 시장질서 유지를 위한 협정체결의 권고
4. 국가안보 또는 국민의 생명·건강에 대한 위해방지등을 위한 조치
5. 기타 국내산업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③상공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의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공부장관으로부터 협조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구제조치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공부장관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당해 구제조치의 시행을 위하여 주요 이해당사국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 그에 소요된 기간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법 제34조제1항제1호의 조치는 5년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무역위원회가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례검토 결과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건의하는 때에는 5년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3조 (잠정조치의 효력상실)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조치는 무역위원회가 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피해가 없다고 결정한 때 또는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공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결정한 구제조치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제74조 (연례검토등) ①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례검토는 법 제3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공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구제조치를 한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60일이내에 행한다.
②무역위원회는 연례검토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산업피해조사의 대상이 되었던 국내산업을 관장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관련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 대하여 수입실적이나 국내산업의 생산동

향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절 무역위원회

제75조 (회의의 운영) ①무역위원회의 회의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상 비밀의 보호 또는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②무역위원회는 이해관계인이나 참고인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참고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위원장은 무역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6조 (심의·의결사항) 무역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기간의 연장에 관한 사항
2. 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무역위원회의 의견
3. 법 제40조중 결정 및 건의에 관한 사항
4.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종결에 관한 사항
5.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조사 결정에 관한 사항
6.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의 비공개에 관한 사항
7.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세부운영 규정의 제정
8. 기타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77조 (수당의 지급등) 무역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에게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이나 여비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78조 (세부운영 규정) 산업피해의 조사·결정 및 구제조치 건의등 무역위원회의 운영 및 절차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한 것외에 필요한 사항은 무역위원회가 정한다.

제79조 내지 제8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79조 (불공정수출입행위의 신고 및 조사) ①법 제44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이하 "불공정수출입행위"라 한다)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무역업자·무역대리업자·생산업자·관련조합 또는 협회는 당해 불공정수출입행위가 있음을 무역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②무역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거나 불공정수출입행위로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행위에 대하여 불공정수출입행위가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③무역위원회는 제2항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무역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을 듣고자 할 때에는 그 시기 및 장소를 명시한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무역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위원회가 요청한 참고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무역위원회는 제2항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0조 (시정권고 및 무역업정지의 통지) ①법 제4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 권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당해 불공정수출입행위
2. 시정권고의 사유
3. 시정기한
②상공부장관은 법 제4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업 및 무역대리업의 정지를 명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 무역업자·무역대리업자·외국환은행의 장 기타 필요한 기관의 장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81조 (과징금의 부과징수절차) ①상공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위반 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자는 상공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통지일부터 20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7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납부한 자에게 과징금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수납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영수증을 교부한 때에는 지체없이 상공부장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⑤과징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제82조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와 과징금금액) ①법 제4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와 같다.

②상공부장관은 당해 무역업자등의 수출입의 규모·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02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법 제4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문을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과징금부과기준(제82조 관련)

(단위:천원)

| 위반행위 | 해당조항 | 과징금액 |
|---|---|---|
| 1. 법 제4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교역상대국의 법령에 의하여 보호되는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저작권·저작인접권 및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수출·수입하는 행위를 한 때 | 법 제44조 제4항 | 10,000 |
| 2. 법 제4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물품을 수출·수입하는 행위를 한 때 | 법 제44조 제4항 | 7,000 |
| 3. 법 제4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수입계약을 현저하게 위반한 물품을 수출·수입하는 행위를 한 때 | 법 제44조 제4항 | 5,000 |
| 4. 법 제44조제1항제4호의 규정 | 법 제44조 | 3,000 |

| | | |
|---|---|---|
| 에 의한 무역에 있어서 공정 한 상관습에 반하여 물품을 수출·수입하는 행위를 한 때 | 제4항 | |

# 대외무역법시행령

[시행 1988. 12. 31] [대통령령 제12590호, 1988.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대통령령제12,590호(1988·12·31)
대외무역법시행령중개정령

대외무역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갑류무역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수출 또는 수입을 업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납입자본금 또는 출자총액이 5천만원이상인 법인
2. 최근 1월간의 매일의 예금잔고가 5천만원이상인 개인

제10조제3항중 "미화"를 "미합중국통화(이하 "미화"라 한다)"로 한다.

제13조제1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출실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출실적 또는 수입실적"으로, "수출실적"을 "수출실적 또는 수입실적(수출실적 및 수입실적을 합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동조제2항중 "수출실적"을 각각 "수출실적 또는 수입실적"으로 한다.

제23조제1항본문중 "연간"을 "최근 2년중 어느 연간"으로 한다.

제68조중 "180일"을 각각 "120일"로 한다.

제69조제1항중 "30일"을 각각 "20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산업영향조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영향조사의 신청을 받아 그 절차가 진행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제68조 및 제6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